

2020

2

• 통권 438호 •

# 가정상담

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NEWS LETTER • ISSN1227-7568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SNS

트위터▷ <https://www.twitter.com/LegalAidCenter>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koreallawhome>



상담소에서는 1월 14일부터 16일까지 전국 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15시간의 「법과 생활」 교원직무연수를 실시하였다. (관련기사 33면)



본소는 지난 1월 22일 본소를 방문한 이레상담교육원의 가정폭력시설 종사자 양성 교육 교육생 및 직원들 32명을 대상으로 법률구조체험교육을 진행하였다. (관련기사 33면)

## 등지고실 : 무료공개강좌

나와 가족의 정신건강과 행복한 가족관계형성을 돕는 교육강좌

- ▶ 일시 : 매월 둘째 목요일 오후 3시 ~ 5시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 ▶ 진행 : 황순찬  
(사회복지학 박사,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외래교수)
- ▶ 일정 및 강의제목

| 일시      | 강의제목                            |
|---------|---------------------------------|
| 2월 13일  | 모든 정신적 어려움의 근원, 성격장애            |
| 3월 12일  |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만드는 분노조절 및 충동조절 장애 |
| 4월 9일   | 극단적 선택을 초래하는 기분장애               |
| 5월 14일  | 안정된 삶을 방해하는 불안 및 공황장애           |
| 6월 11일  | 현실을 왜곡하고 관계를 파괴하는 망상장애          |
| 7월 9일   | 가정을 무너뜨리는 중독문제                  |
| 9월 10일  | 시간을 넘어서 고통을 지속시키는 트라우마 관련 장애    |
| 10월 8일  | 잃어버린 자아를 찾아서 - 정신증(조현병과 조울병)    |
| 11월 12일 | 몸이 기억하는 고통, 신체 및 수면장애           |
| 12월 10일 | 건강한 삶의 근원을 만드는 아동기 정신건강         |

##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김병후 원장과 함께하는 부부갈등과 상처 다루기-

가족·부부상담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상처받은 관계를 치유하기 위한 공개강좌 프로그램

- ▶ 일시 : 2020년 1월~11월 매월 셋째 목요일 오후 3시~5시(8월 휴강)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수시접수 가능)
- ▶ 강사 : 김병후 원장 (정신과 전문의, 김병후정신건강의학과)
- ▶ 장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8층 강의실
- ▶ 강의 일정 및 주제

| 일시         | 강의제목                       |
|------------|----------------------------|
| 2월 27일(목)  |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사회적 차이       |
| 3월 26일(목)  | 사랑의 과학                     |
| 4월 23일(목)  | 신경과학과 정신분석의 관점에서의 분노       |
| 5월 28일(목)  | 부부갈등이 만들어지는 경로             |
| 6월 25일(목)  | 외도                         |
| 7월 23일(목)  | 어린 시절의 경험이 부부 관계에 미치는 영향   |
| 9월 24일(목)  | 갈등을 일으키는 성격과 가치관           |
| 10월 22일(목) | 갈등이 해결 되어 질 때 볼 수 있는 관계 양상 |
| 11월 26일(목) | 성숙한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특성      |

## 2020년 2월 교육부

### 이혼, 현실과 미래 더 생각해보기

부부갈등 및 이혼에 관해 보다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심사숙고함으로써 후회 없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 상담프로그램

- ▶ 대상 : 결혼생활의 어려움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남녀 (당사자 외 참여불가)
- ▶ 내용 : - 1단계 : 법률상담 및 이혼 관련 비디오 시청  
매주 평일 상시  
- 2단계 : 집단심리상담 (이혼 전 교육 1단계 참가자, 사전예약 필수)  
연중 매월 둘째·넷째 월요일 오후 2시 ~ 4시 (3월 9일, 3월 23일)
- ▶ 강사 : 김명순 소장 (세은심리상담연구소)

### 비혼모가정을 위한 워크숍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 하는 엄마랑 아기랑 행복 캠프」  
 비혼모 가정이 처한 법률적·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비혼모 가정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1박2일 자녀 동반 캠프

- ▶ 일시 : 2020년 5월 / 8월 / 9월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비혼모 가정
- ▶ 후원 :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SAMSUNG 삼성생명)

### 생활법률강좌

- ▶ 일시: 연중(요청 시 사전일정 조율)
- ▶ 신청방법: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전화 또는 이메일로 신청)

#### - 전문가를 위한 출장 법 교육

1366 상담원, 이주여성 지원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전문상담원에게 필요한 가족관련 법률·가정폭력특별법 등을 강의함으로써 직무전문성을 향상시키는 출장 법 교육

#### - 학교현장을 찾아가는 법 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초·중·고교 학생 및 학부모·교사들에게 가족관련 법률 및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는 출장 법 교육

#### - 학생들을 위한 법률구조 체험교육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법률구조·가족관련 법률 및 가정폭력특별법 강의를 통해 법률구조 제도에 대한 이해와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는 체험교육

※ 일정 및 교육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진행 상 반드시 사전접수 바랍니다.

●장 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8층 강의실(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전문의 요망) ●교육문의 및 신청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  
 TEL : 02-782-3601 FAX : 02-780-0485 홈페이지 : [www.lawhome.or.kr](http://www.lawhome.or.kr) E-mail : [edu@lawhome.or.kr](mailto:edu@lawhome.or.kr)  
 트위터 : <https://www.twitter.com/LegalAidCenter>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 ☎ 대표전화 1644-7077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SNS

트위터▷ <https://www.twitter.com/LegalAidCenter>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koreallawhome>



상담소에서는 1월 14일부터 16일까지 전국 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15시간의 「법과 생활」 교원직무연수를 실시하였다. (관련기사 33면)



본소는 지난 1월 22일 본소를 방문한 이례상담교육원의 가정폭력시설 종사자 양성 교육 교육생 및 직원들 32명을 대상으로 법률구조체험교육을 진행하였다. (관련기사 33면)





표지글씨 | 박병호 서울대 명예교수  
표지그림 | 이현혜 평생회원  
〈동백꽃〉

- 4 • 이 달의 메시지
- 6 • 특집 | 2020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9 • 특별기고 | 프랑스 이혼법
- 18 • 기획연재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00년을 향해 ㉔
- 21 • 가정폭력상담실
- 24 • 인터넷 상담
- 25 • 좋은 책  
부당세습
- 26 • 결혼과 인생(204) 영화 이야기  
결혼 이야기 \_ 김용언
- 28 • 실무수습 소감문
- 32 • 상담소 소식과 상담통계
- 35 • 지부 상담통계
- 36 • 백인변호사단 소송구조



## 이 달의 메시지



###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소통하고 배려하는 시민의식이 더욱 필요합니다.



곽 배 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요즘 2, 30대 젊은 세대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잘 모를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1989년부터였습니다. 그 이전까지 관광 목적의 해외여행이란 극히 어려운 것이어서 국가의 허가를 얻어야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8년도 기록에 의하면 이 해 한국인들이 세계에서 6번째로 해외여행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같은 통계는 비단 2018년 한 해에 국한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증가일로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해외여행 역시 우리 사회의 급격한 변화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글로벌한 세상’, ‘세계화의 시대’, ‘지구촌’ 이러한 말들은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전 세계가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까워진다는 것은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문화를 풍성하게 하며 경제적 향상을 도모하게 하지만 한 편으로는 과거에는 없었거나 알지 못했던 위험 또한 공유하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21세기 들어 우리가 겪었던 사스나 메르스 그리고 바로 오늘 우리에게 위협으로 다가오는 신종 코로나 같은 것들이 이러한 위험 가운데 한 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기치 못하고 부딪히게 되는 불가피한 상황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의 민낯을 드러나게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의 창궐은 미지의 것에 대해 사람이 얼마나 나약하고 무기력 한가, 극한상황에서 얼마나 비겁하고 이기적이며 잔인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편으로 인간애란 또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알게 해 줍니다. 언제 어느 곳에서 어떤 사람에 의해 나와 내 가족이 치명적인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가 생각하면 그 원인일수도 있는 타인에게 드러내는 적대적 감정이나 행동들이 마음 깊이 이해되기도 하면서 이해와 별개로 사람이란 역지사지(易地思之)할 수 있어야하고 이것이 다른 존재들과 사회를 이루어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들의 최소한의 이성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이번 바이러스의 발상지에서는 이미 은퇴한 팔순의 감염병 전문의가 자원하여 다시 병원으로 복귀한다는 내용을 비롯해 의료진들의 눈물겨운 헌신이 험한 소식 중에 감동을 전합니다. 뿐 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현지에 전세기를 파견해 그곳에 있는 우리 교민들을 데려왔는데 이 과정에서도 시민의식이 빛을 발하였습니다. 그곳의 교민들은 연락망을 만들어서 우선 노약자와 임산부를 우선으로 전세기에 탑승하도록 했으며, 전세기의 기장과 승무원들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누가 가려고 할 것인가 우려했는데 그 같은 걱정이 무색하게도 자원자가 넘쳤다고 하니 이러한 소식은 심란한 가운데에도 우리로 하여금 사람과 사회 전반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해 줍니다.

교민들의 귀국 후 거처와 관련해서도 정책상의 혼란으로 인하여 지역 이기주의의 일단인 것처럼 불협화음이 우려되기도 했으나 크게 사회문제로 변지지 않아 다행이었습니다만 이번 일과 관련해 정책 당국이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하고 처신하는 것이 필요했다는 교훈도 얻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사회 현실에서 상담소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지난 메르스 사태 때와 같이 이번에도 저는 상담소를 책임진 자리에서 하루하루 노심초사합니다. 상담소는 물론 출장상담을 나가 있는 가정법원에서 매일 불특정다수의 내담자들과 만나게 되는 직원들에 대한 염려가 무엇보다 큼니다. 또한 모든 사회적 활동이 위축되면서 혹여 절실하게 상담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시절에는 그저 그런 날들, 별일 없는 일상의 소중함이 더욱 절실히 다가옵니다.

지금은 중국에서 교민을 태운 전세기가 처음 도착한 1월 말입니다. 2월 들어 열 몇번째 확진자가 나타났다는 뉴스도 새로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메시지가 담긴 <가정상담>을 받아 보시게 되는 2월 중순에는 이 사태가 가라앉아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하루 속히 일상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며 그리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이해하고 바르게 소통하며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근간이 되어야 하고 무엇보다 정직하고 원칙이 지켜지는 정책과 정책당국의 노력이 바탕에 있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모두의 안녕과 건강을 기원 합니다.



특 집

2020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창립 64주년의 해

### “법률구조를 통한 법률복지 사회 구현 - 우리 사회의 모든 가정과 함께”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2020년 창립 64주년의 해를 맞이하였다. 1956년 우리나라 최초의 가정문제 전문상담기관으로 법률구조 사업을 시작해온 상담소는 언제나 한 발 앞서 가정문제를 진단하고 다양한 측면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해왔다. 올해도 변함없이 법률상담 및 소송구조는 물론 이의 연장선에서 가족법 개정운동에 앞장설 것이며 서울가정법원 등의 출장상담과 인터넷 상 법률상담 등을 통해 법률구조 사업의 내실을 다지고 법률상담 및 소송구조를 더욱 활성화 하여 우리 사회 모든 가정과 가족구성원들이 평등한 가운데 법률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임상실습 및 출장 법 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법 교육을 활성화하여 법의 생활화에 적극 나서고 사회의 당면과제로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가족문제에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며, 가정문제 예방을 위한 교육사업 및 연구·출판·홍보 사업도 변함없이 충실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다음은 2019년 11월 정기 후기 이사회를 통해 확정된 2020년도 사업계획으로, 월별 계획은 상담소 내외의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

#### 법률구조 사업

##### 1) 법률상담 및 소송구조

서울가정법원 출장상담, 야간상담 등의 증가추세에 맞추어 상담을 더욱 충실하게 하도록 내실화를 기하고 다문화 가정으로 대상으로 한 영어법률상담, 심리상담의 확대, 센터, 사회복지 기관 등의 순회상담을 비롯해 법원위탁 협의이혼전상담,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등에 관한 소송구조와 가정폭력피해여성,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양육비 청구 등에 대한 소송 지원을 더욱 확대한다. 특히 업무협력기관(구 지부) 지원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할 예정이다.

##### 2) 가정폭력 행위자 상담 및 교육

가정폭력행위자를 대상으로 개별·부부·가족상담 및 음주상담, 집단상담, 교육강좌인 동지교실 및 부부캠프와 피해자 자조모임인 라오니 모임 등 현재 진행 중인 가정폭력 행위자 상담 및 성행교정 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하게 개



발하여 실시한다. 상세한 프로그램을 다음 장에 소개하였다.

- 4월 행복찾기 부부캠프(1)
- 6월 가정폭력 의식개선 동영상 영어자막 삽입
- 10월 가정폭력 전문가 간담회  
가정폭력예방지침서 발간
- 11월 행복찾기 부부캠프(2)
- 12월 라오니 캠프

### 3) 법률계몽사업

법의 생활화와 가정 내 양성평등, 가정의 민주화를 위해 생활법률강좌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법률해설 홍보물을 다양하게 제작하여 전국적으로 배포, 널리 홍보하며 신문, 잡지, 라디오, TV, 인터넷 매체 및 본소 홈페이지를 통한 법률계몽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2017년부터 시작한 상담소의 법률상담에 관한 라디오 광고를 지속하며, 페이스북 등의 SNS 및 유튜브를 통한 홍보 방안도 지속적으로 모색한다.

### 법 개정 및 제정 운동

가족법 개정의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족법개정자문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하여 이에서 논의된 사안을 바탕으로 심포지엄,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해 미흡하거나 부적절한 가족법이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 또한 개정 가족법을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 활동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 2월 가족법개정 자문위원회

### 교육 및 예방·치료사업

가정문제의 예방과 가족구성원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현실의 변화에 맞추어 다양하게 운영하고, 법무부 지정 법문화진흥센터로써 법 교육 강화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출장 법 교육, 전문가를 위한 전국순회 교육, 교원직무연수, 학생들을 위한 법 교육 등을 더욱 확대 실시. 또한 2개월에 한 번 직원 재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한다.

가족관계의 변화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한부모 가정 특히 비혼모와 그 자녀를 대상으로 한 법교육 및 교육 프로그램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또한 법대생과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법률 임상교육, 사회복지학과생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임상실습, 사법연수원생 상담봉사, 대학생 봉사학점 이수 등도 더욱 내실을 기하도록 할 것이다.

- 1월 교원직무연수
- 3월 직원재교육(1)
- 4월 서울시민과 함께 하는 출장 법교육(1)  
직원재교육(2)
- 5월 노숙인 신용회복 관련 법교육(1)  
비혼모 가정을 위한 워크숍(1)
- 7월 직원재교육(3)
- 8월 비혼모 가정을 위한 워크숍(2)
- 9월 서울시민과 함께 하는 출장 법교육(2)  
비혼모 가정을 위한 워크숍(3)  
직원 대상 부패방지 및 폭력 예방 교육  
직원재교육(4)
- 10월 노숙인 신용회복 관련 법교육(2)  
서울시민과 함께 하는 출장 법교육(3)
- 11월 직원재교육(5)  
전화 자원봉사자 모임 및 교육



## 조사·연구 사업 및 심포지엄 개최

상담을 통해 드러난 가정의 문제를 근거로 조사·연구를 활성화하여 이를 가족법 개정이나 제정으로 이끌어서 가정의 민주화 나아가 가족구성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더욱 심도 깊은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 2월 이혼 및 부부갈등 상담통계 분석
- 3월 다문화 가정 상담통계 분석
- 4월 심포지엄(1)
- 6월 심포지엄(2)
- 7월 가정폭력행위자 상담통계 분석  
2019년도 상담통계집 발행
- 10월 심포지엄(3)

## 자료실 운영

법률, 가정, 여성관련 전문 도서 및 기타 자료를 수집하여

전문 자료실로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교류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홈페이지를 업데이트하여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고 도서수종을 확대 하며 서고 및 각종 파일과 행정박물을 더욱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 출판·홍보 사업

2019 개정 가족법 홍보 브로슈어 발행 등 가족법 개정에 대한 홍보를 계속하고, 법의 생활화를 위한 출판 및 홍보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

## 전산

상담 프로그램 및 상담소 및 가정폭력상담소, 가족법개정운동본부의 홈페이지 유지·보수 작업, 상담소 홍보를 위한 웹 메일 편집 및 발송,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상담소 홍보를 연중 지속한다.







## 프랑스 이혼법\*

### 안 문 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지난 2015년 대법원의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사건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은 종전의 판례와 마찬가지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부정하면서도 그 허용 가능성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제시한 바 있었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찬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현행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원인 규정만으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문제의 해결이나 파탄주의 채택 등에 많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사건을 포함하여 파탄주의로의 전환은 이혼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만 가능할 것으로, 우리나라 보다 앞서 파탄주의 도입을 고민하고 채택한 나라들의 이혼법을 검토하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 내지 사회적 의식변화를 포괄할 수 있는 이혼법제의 도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가정상담」에서는 2020년 한 해 동안 서너 차례에 걸쳐 서구 등의 이혼법제를 소개하고자 하며, 지난 호에 영국의 이혼법을 개관한데 이어 이번 호에서는 프랑스의 이혼법을 간략히 개관해 보기로 한다.

### I. 역사적 배경

과거 로마에서 처에 대한 축출이혼을 부(夫)에게 인정한 것과는 달리, 프랑스는 가톨릭교회의 영향으로 고법시대에는 이혼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1563년 트리엔트 공의회를 통해 '탁자와 침대를 분리하는 방식'으로써 별거를 인정하거나, 혼인무효를 선고하는 방식을 통해 이혼과 유사한 결과를 허용하고 있었다. 그 후 계몽사상과 1789년 프랑스혁명의 영향을 받은 1791년 프랑스헌법은 종교의 자유와 사적 계약으로서의 혼인을 선언하게 되었고, 1792년 9월

20일 법을 통해 학대, 모욕, 풍기문란, 망명 등과 같은 7가지 유책사유뿐만 아니라 성격 차이로 인한 이혼 및 협의이혼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1804년의 나폴레옹 민법은 기존의 협의이혼에 부모의 승낙, 5회의 법원 출석, 이혼 후 3년의 재혼 금지 등의 요건을 추가하여 그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였으나, 협의이혼을 여전히 인정하였다. 그러나 왕정이 복고되자 1816년 5월 8일 보날드법을 통해 이혼제도는 완전히 삭제되었다. 이후 약 70년 동안 프랑스민법에서 사라진 이혼제도는 1884년 7월 27일 나케법을 통해 재편입되었으나, 나케법은 유책이혼만을 허용했기 때문에 이혼에

\* 해당 글은 “안문희, 2004년 프랑스 이혼법-이혼사유를 중심으로-, 민사법학 (2013)”, “안문희, 2004년 프랑스 이혼법-이혼의 효과를 중심으로-, 가족법연구 (2013)” 및 “안문희, 프랑스의 판사 없는 이혼에 관한 연구-2016년 11월 18일 법과 관련하여-, 가족법연구 (2017)”의 논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합의한 과실이 없는 부부는 거짓으로 이혼사유를 만들어야만 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었다.

프랑스 사회에서 현대적 의미에서의 이혼은 1975년 7월 11일 이혼법을 통해 신설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1975년 이혼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유책이혼만을 인정한 1884년 나케법에 대한 비판은 지속되었고, 이와 더불어 1960년대부터는 개인주의 사상, 여성의 권리 및 사회적 진출 등과 같은 사회적 움직임 등의 사회적 변화에 따라 이혼법 개정에 대한 요구는 점점 커져갔다. 이에 따라 1975년 이혼법은 ‘이혼사유의 다양화’와 ‘이혼결과의 갈등 제거’라는 목적을 가지고 협의이혼, 수락이혼, 파탄이혼 및 유책이혼이라는 4가지 이혼사유를 제정하게 되었고, 세부적인 요건들은 개정되었지만 4가지 이혼사유는 현행 이혼법인 2004년 5월 26일 법을 통해서도 유지되고 있다. 2004년 이혼법은 기존의 목적 외에 ‘이혼절차의 간이화’라는 목적을 추가하였고, 가장 최근의 개정인 2016년 11월 18일 법은 특정의 경우에는 변호사와 공증인을 통한 협의이혼까지도 허용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들 4가지 이혼사유(Ⅱ)와 이혼의 효과(Ⅲ)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살펴본다.

## Ⅱ. 이혼사유

프랑스의 이혼사유는 4가지로 협의이혼, 수락이혼, 파탄이혼 및 유책이혼이다.

### 1. 협의이혼(divorce par consentement mutuel)

프랑스 최초의 협의이혼은 1792년 법을 통해 제정되어, 왕정복고로 1816년에 프랑스민법에서 사라졌다가 1975년 법을 통해 현대적 규정으로 다시 신설되었다. 특히 협의이혼의 요건과 절차는 ‘21세기 법원의 현대화에 관한 2016년 11월 18일 법’을 통해 가장 최근에 개정되었다. 최근 개정을 통해 협의이혼은 재판 외의 협의이혼과 재판상 협의이혼의 2가지 종류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우선 **재판 외의 협의이혼**의 경우는 이혼에 합의한 부부가 변호인들이 연서하고 공증인이 원본으로 보관하게 되는

사서증서를 통해서 가능해졌다(프랑스민법 제229조 제1항). 재판 외의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혼인의 해소와 이혼 후의 결과에 대해 의사가 합치한다는 사실을 부부 각자의 변호인이 확인하고, 이를 기재한 사서증서 형식의 협의서에 부부와 변호인들이 연서하는 방식을 따라야 한다. 이때, 이혼 후의 결과는 부부 사이에서 요구되는 부부재산제의 청산이나 부양료의 지급을 비롯하여, 자녀에게 필요한 교육비를 포함한 자녀의 양육과 관련한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의 사항과 같이 이혼으로 야기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포함하게 된다. 그리고 해당 협의서는 사서증서로서 공증인이 보관하게 된다.

그럼에도 재판 외의 협의이혼은 첫째, 판별력이 있다고 여겨지는 미성년 자녀가 본인의 의견을 법정에서 개진하고자 하는 경우, 둘째, 부부 중 일방이 피성년후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불가능하다(프랑스민법 제229-2조). 첫째의 판별력 있는 자녀는 부모의 이혼사실을 인지하고 이와 관련한 본인의 의견이 있는 경우로 미성년 자녀의 의사 개진 여부는 변호사를 통해 확인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만약 의사 개진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이 위의 협의서에 기재된다. 두 번째의 부부 중 일방이 피성년후견인인 경우는 재판 외의 협의이혼뿐만 아니라 재판상 협의이혼도 허용되지 못하는데, 이는 피성년후견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된다.

이어서 **재판상 협의이혼**은 앞서의 판별력 있는 미성년 자녀가 판사에게 의견을 개진하고자 하는 본인의 의사를 전달한 경우로 한정되며, 미성년 자녀가 의사를 개진하기 위한 심리가 열리게 된다. 재판상 협의이혼이 법원의 심리를 거쳐야 함에도, 사실상 재판 외 협의이혼의 요건과 마찬가지로, 혼인의 해소에 대해서 부부의 의사가 합치되고, 이혼 후의 결과인 재산이나 자녀의 교육 및 양육과 관련한 사항에 있어서도 의사의 일치가 이루어져야 한다(프랑스민법 제230조). 판사는 부부의 이혼의사를 확인하고, 이혼 후의 결과를 기재한 협의서를 심사한 후 이혼을 선고하게 된다(프랑스민법 제232조).

이와 같은 협의이혼은 이후에 살펴보게 될 수락이혼, 파탄이혼 또는 유책이혼의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도 언제든지 전환이 가능하며, 미성년 자녀가 의견을 개진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재판 외의 협의이혼으로, 미성년 자녀가 의견을 개진하기를 원치 않는 경우에는 재판상 협의이혼으로 절차가 변경될 수 있다(프랑스민법 제247조).

## 2. 수락이혼(divorce sur demande acceptée)

수락이혼은 파탄된 혼인을 해소하는 것에는 부부의 의사가 합치되었으나, 이혼 후의 결과에 대해서 부부의 의사가 일치되지 못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 이혼사유이다(프랑스민법 제233조). 부부가 혼인의 해소에 합의했다는 점에서 수락이혼을 불완전한 협의이혼으로 부르기도 한다. 부부 각각은 이혼의 결과 즉, 사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재산적 부분인 혼인재산의 청산에 대한 의견서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미성년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에 관한 의견서를 판사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판사는 제출된 위의 의견서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프랑스민법 제234조).

## 3. 파탄이혼

(divorce pour altération définitive du lien conjugal)

흔히 파탄이혼(le divorce faillite)이라 불리는 해당 이혼의 본 명칭은 ‘혼인관계의 절대적 악화로 인한 이혼’이다. 역사적으로 파탄이혼은 1975년 법을 통해 프랑스 이혼법이 최초로 도입한 이혼사유로서, 혁신적이며 가장 현대적 형태의 이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혼인을 해소하고자 하는 배우자 일방이 혼인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과실 없는 다른 배우자 일방의 동의나 유책 없이도 혼인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축출이혼이라는 비판 또한 받고 있다.

파탄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부 사이의 생활공동체가 종료한지 2년이 요구되는데(프랑스민법 제237조 및 제238조), 해당 2년이라는 기간의 기산은 최소한 조정 불성립 결정 이후 이혼사유를 결정해야 하는 시점인 이혼소송 청구시점까지이며, 이러한 2년의 별거기간은 직업이나 특정의 목적을 위한 별거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만약 부부 각각이 파탄이혼과 유책이혼을 청구한 경우에 판사는 유책이혼 청구를 먼저 검토해야 하므로 유책배우자의 파탄이혼 청구를 제한하고 있다(프랑스민법 제246조).

그러나 유책이혼의 청구가 기각되고, 이에 대한 반소로써 파탄이혼이 청구된 경우에는 2년의 별거기간 요건이 면제된다(프랑스민법 제238조 제2항).

파탄이혼을 프랑스민법에 최초로 도입한 1975년 법에 비해 2004년 법은 파탄이혼을 보다 객관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2가지로 분석할 수 있다. 첫째, 1975년 법은 파탄이혼을 도입하면서 “인류애”를 근거로 만약 6년의 기간 동안 배우자의 불치의 정신병으로 인해 현실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장래에도 공동생활을 예상할 수 없는 경우에, 다른 일방의 배우자에게 이혼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이유로 파탄이혼을 허용했으나, 2004년 법을 통해 해당 규정은 삭제되었다. 둘째, 배우자의 연령, 혼인기간을 고려할 때 이혼결정이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정신적, 경제적으로 상당히 가혹한 결과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파탄이혼을 제한하였던 1975년 규정을 2004년 법을 통해 삭제하여 파탄이혼이 보다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 4. 유책이혼(divorce pour faute)

유책이혼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프랑스의 경우에도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이혼사유이며, 짧은 기간 존치된 협의이혼을 제외하면 1975년 법을 통해 이혼사유가 다양화되기 이전까지 프랑스 사회의 사실상 유일한 이혼사유로 볼 수 있다. 1975년 법 이전에는 간통, 체벌이나 불명예행 및 심각한 상해, 학대, 남용과 같은 구체적 유책사유가 있었으나, 1975년 법을 통해 배우자의 형사상 실형 선고를 제외한 나머지 유책사유를 삭제하였고, 2004년 법을 통해 해당 사유마저 삭제해 유책이혼의 사유를 일반화하였다.

유책이혼의 사유는 배우자의 혼인의무에 대한 위반으로, 프랑스민법 제242조는 혼인의무에 대한 심각하고 반복되는 위반은 배우자의 책임이며, 이로 인해 공동생활의 유지가 참을 수 없게 된 경우 유책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유책사유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사항이 요구된다.

첫째, 배우자의 혼인의무위반이 필요한데, 이때의 혼인의무는 존중의무, 부양 또는 협조의무, 정조의무(프랑스민

법 제212조), 가족의 물질적, 정신적인 부분 및 자녀의 교육과 미래에 대한 준비의무(프랑스민법 제213조), 일상가사비용의 능력에 따른 부담(또는 분담)(프랑스민법 제214조) 및 동거의무(프랑스민법 제215조)를 가리키며, 위의 의무의 위반은 유책이혼사유를 구성한다. 둘째, 위의 혼인의무위반행위로 인해 공동생활의 유지가 참을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를 요구하는데, 법원이 유책이혼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유책이 부부공동생활에 영향을 주어 그 유지가 불가능하게 된 상태를 의미한다. 셋째, 위의 혼인의무위반은 배우자 본인의 자유로운 의지에 의한 것, 심각하고 반복적일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유책이혼 청구자와 그 배우자가 해당 유책사유에 대해서 화해한 경우에는 유책이혼 청구가 무효화된다. 이때의 화해는 이혼청구자인 배우자가 유책배우자의 과오를 용서한 경우를 의미하며, 해당 이혼청구는 각하된다. 이는 화해가 배우자의 유책을 제거한다고 보기 때문으로, 이러한 화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2가지 사항이 필요하다. 첫째, 용서가 명백한 외관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일방 배우자의 유책에 기한 별거생활을 종료하고, 공동생활을 재시작한 경우 또는 별거 없이 지속적인 부부공동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와 같이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라는 외관이 요구된다. 둘째, 유책배우자가 자신의 혼인의무위반을 인식하여 이에 대해 상대방 배우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또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였을 경우에 화해가 성립되었다고 본다.

위의 두 요건이 충족되면, 법원은 화해가 성립했다고 보고, 유책이혼 청구는 각하된다(프랑스민법 제244조 제2항). 또한 이미 화해가 성립한 후에, 배우자의 유책을 이유로 다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나 화해의 필요성에 따라 부부가 공동생활을 유지하거나 재시작하는 경우에는 화해가 성립했다고 보지 않는다(프랑스민법 제244조 제3항).

### III. 이혼의 효과

프랑스 이혼법은 이혼 후의 결과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협의이혼의 경우는 부부의 합의에 의해, 나머지 수락이

혼, 파탄이혼 및 유책이혼의 경우도 가능한 경우에는 부부의 합의로,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판사가 판단하도록 하면서, 이혼 후의 결과를 이혼선고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이혼 후의 결과는 크게 부부 사이와 부모와 자녀 사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1. 부부에 관한 이혼 후의 효과

이혼의 효과 중 가장 핵심적 사항은 혼인관계의 종료이며, 이러한 혼인관계의 해소는 혼인의무의 소멸과 혼인(재혼)의 자유라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혼은 혼인관계를 해소시키지만, 그럼에도 예외적으로 이혼의 효과에 영향을 받지 않는 두 경우가 존재한다. 첫째, 혼인으로 성년의제된 미성년 배우자의 경우와 둘째, 프랑스인과의 혼인으로 프랑스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는 이혼으로 인해 이미 취득한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다.

반면에 이혼에도 불구하고 전(前)배우자의 직계혈족과의 혼인은 금지되며,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성(姓)으로 본인의 성을 변경한 부부 일방이 이혼 후에도 전배우자의 성을 사용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혼으로 혼인이 파생한 모든 관계가 해소된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후자의 경우, 이혼 후 전배우자의 성(姓)의 사용문제가 남게 된다. 원칙적으로는 혼인기간 동안 전배우자의 성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혼으로 인해 해당 사용권은 상실되어(프랑스민법 제264조 제1항), 이혼으로 혼인 전 본인의 성을 회복하게 된다. 그러나 이혼에도 불구하고 전배우자의 성을 사용할 수 있는 2가지 경우는 전배우자가 상대방에게 본인 성의 사용을 허용한 경우 또는 전배우자의 성의 사용자인 배우자 또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판사의 결정이 있는 경우가 된다(프랑스민법 제264조 제2항). 부부 모두에게 이혼 후 전배우자의 성에 대한 예외적 사용이 인정된 것은 2004년 법의 개정을 통해서였다. 2004년 법 개정 전에는 이혼한 전처에 대한 전배우자의 성의 사용만이 허용되었는데, 이는 유럽인권협약 제7의정서의 제5조가 규정하는 부부 사이의 형평 원칙에 대한 위반일 뿐만 아니라 ‘남녀평등원칙’에 대한 위반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2004년 법을



통해 이혼한 부부 모두에게 전배우자의 성에 대한 예외적 사용권을 인정하게 되었다.

혼인으로 인해 당사자인 부부에게 **재산상의 변화** 또는 효과가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혼 시에도 부부의 재산적 사항, 특히 혼인에 따른 부부재산제에 대한 청산이 모든 부부에게 요구된다. 부부재산제의 청산은 혼인관계의 해소에 따른 결과로, 부부재산제가 공동재산제이든, 별산제이든 관계없이 부부가 함께 구입한 공동 또는 공유재산에 대한 청산은 이혼하려는 모든 부부에게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혼인기간 동안의 부부 사이의 증여 및 혼인급부에 따른 혜택과 이혼으로 인한 거소에 관한 결정 또한 필요하게 된다.

특히 **부부재산제의 청산**과 관련하여 협의이혼을 하는 부부뿐만 아니라 수락이혼, 파탄이혼 및 유책이혼을 청구한 부부 또한 합의로 재산적 사항에 관해서 협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프랑스민법 제265-2조). 이러한 협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수락이혼, 파탄이혼 및 유책이혼을 청구한 경우에는 부부의 재산적 이익의 분배 및 청산 결정에 대한 판사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부부재산제의 청산 및 분배에 관한 권리는 이혼판결로 소멸되며, 부부재산제도 해소된다.

그리고 부부 사이의 **증여 및 혼인급부**와 관련하여 2004년 법은 증여와 혼인급부의 성격을 현재 및 장래시점으로 구분하여 철회가능성을 다르게 규정하게 되었다. 먼저 생전증여는 현존재산에 대한 증여의 효력이 혼인기간 중에 이미 발생한 경우에 증여의 철회는 불가능하다(프랑스민법 제1096조 제2항). 혼인 중 효력이 발생한 어떠한 형태의 혼인급부나 증여에도 이혼으로 인한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프랑스민법 제265조 제1항). 사후증여는 혼인기간동안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으며(프랑스민법 제1096조 제1항),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한 증여를 철회하는 경우, 수증자의 지위를 가졌던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철회의 고지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후증여는 원칙적으로 철회를 허용하므로, 이혼 시 증여하는 자의 의사에 의하게 되었다(프랑스민법 제265조 제2항). 이혼 선고시 증여하는 자의 의사가 판사에 의해 확인되면 이후에 철회는 불가능하게 된다. 부부 사이의 생전증여나 사후증여는 공통적으로 자녀의 사후

출생이나 인지를 이유로 철회될 수 없다(프랑스민법 제1096조 제3항).

부부의 **혼인 거소**는 혼인기간 동안 사법적 보호를 받는 특별대상으로, 이혼선고 전까지, 즉 이혼소송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이러한 특수지위는 유지된다. 부부의 거소는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며, 이혼의 효과는 각각의 경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첫째, 거소가 부부의 공동임대차에 의한 경우, 부부재산제의 유형이나, 임대차계약시기(비록 혼인 전)와는 관계없이, 임차권은 부부 각각에게 공동으로 귀속한다(프랑스민법 제1751조 제1항). 부부의 이혼 시, 판사는 가족적 또는 사회적 복리, 특히 자녀 양육이나 부부 일방의 거소 내에서의 직업 활동 등을 고려해 위의 임차권을 부부 일방에게 부여할 수 있다(프랑스민법 제1751조 제2항).

둘째, 부부의 거소가 부부공동소유인 경우, 재산분할시 부부 일방이 이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받고 나머지 일방은 동일한 가치의 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다(프랑스민법 제831-2조). 만약 재산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우선권에 의해 거소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부부 일방은 나머지 일방인 전배우자에게 그 부족분을 부부가 별도로 약정한 사항이 없는 한, 프랑스민법 제1476조 제2항에 따라 가액으로 지불할 수 있다. 부부재산제가 별산제인 경우라 해도, 거소의 공동구매와 같이 거소가 부부의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위의 규정이 적용된다(프랑스민법 제1542조). 따라서 부부의 합의에 의한 매매 또는 부부 일방의 소유권 취득시 다른 일방에 대한 동일한 가치의 가액의 지급이 가능하다(프랑스민법 제1476조 및 제1542조).

마지막으로, 거소가 부부 일방의 고유재산 또는 특유재산인 경우라도, 판사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위 거주지를 자녀의 주거소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단독친권(또는 공동친권)을 실행하는 나머지 일방에게 판사는 이에 대한 임차권을 부여할 수 있다(프랑스민법 제285-1조 제1항). 판사는 부여하는 임대차계약서에 기간, 조건 및 임대료 등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항은 자녀가 수인인 경우 가장 어린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갱신될 수 있다(프랑스민법 제285-1조 제2항). 그리고 만약 임대차계약이 필요하지 않는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판사는 임대

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프랑스민법 제285-1조 제3항).

**연금 및 퇴직금**과 관련해 이혼은 부부 일방 또는 양당사자가 제3자와 체결한 협약상 또는 법률상의 권리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해 이혼 후에도 전배우자의 퇴직금 또는 연금에 대한 권리를 나머지 일방에게 인정하고 있다(프랑스민법 제265-1조). 구체적으로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퇴직 공무원 및 군인 연금에 관한 법 제L.44조) 또는 사회보장에 따른 퇴직연금(사회보장법 제L.353-3조) 등의 권리를 이혼한 전배우자에게 이들의 재혼 또는 사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정하고 있다.

반면에 부양료와 손해배상의 경우는 부부 일방의 상대방에 대한 개별적 청구가 필요하다. 특히 이혼으로 부부 일방의 경제적 곤란이 예상되거나 이혼한 부부 사이에 경제적 불균형이 심각한 경우에는 비록 과실 있는 배우자라 할지라도 이혼 후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유책배우자에 대한 과실 없는 배우자 일방의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

혼인의 해소로 인한 부부 사이의 부양 및 협조의무를 소멸시키므로(프랑스민법 제270조 제1항), 이혼으로 혼인생활에서 유지된 모든 경제적, 재산적 상황의 변경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만약 부부 중 일방이 혼인기간 동안 자신의 직업적 경력을 포기하고 가사 및 자녀의 육아와 교육에 전담한 경우에는 이혼으로 경제적 곤란을 겪게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나머지 일방에게 전배우자와의 경제적 격차를 근거로 부양을 의무지우는 것이 **부양료**의 입법취지라고 할 수 있다.

2004년 법을 통해 부양료는 모든 이혼사유, 즉 협의이혼, 수락이혼, 파탄이혼 및 유책이혼에서 가능하게 되었고, 파탄이혼의 청구자뿐만 아니라 유책이혼의 과실 있는 배우자에게도 부양료청구가 허용되었다. 1975년 법을 통해 최초로 규정된 부양료는 이혼 후의 갈등적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이혼 판결시 대부분의 경우 종신연금의 형태로 결정되었다. 개정 전 부양료에 대한 변경청구는 허용되지 않았으나, 2000년 6월 30일 법을 통해 전배우자들의 재산 상태나 필요비용의 중요한 사항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 한해 부양료의 변경청구가 가능하게 되었고, 2004년 법을 통해 원칙상 유책배우자에게도 부양료 청구권이 인정되었으며, 이는 비록 이혼한 부부라 할지라도 혼인의 해소로 인한 생활

조건의 격차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정되었다(프랑스민법 제270조 제2항).

그러나 위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부양료지급의무자의 재산과 부양료청구권자의 필요경비는 첫째, 예측 가능한 장래 및 이혼시의 상황을 고려한 경우 또는 둘째, 혼인파탄의 개별적 상황에 비추어 부양료청구권자의 절대적 과실에 의한 유책이혼의 경우에 판사는 형평을 이유로 부양료의 지급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프랑스민법 제270조 제3항). 물론 형평에 대한 판단은 판사의 재량에 따르며, 부양료청구의 경우에 부부 사이의 형평에 대한 고려는, 유책이혼의 과실 있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수락이혼이나 파탄이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부양료청구권자의 절대적 과실, 예를 들면 배우자의 폭행이나 자녀에 대한 가혹행위와 같은 명백히 심각한 과실에 의한 유책이혼의 경우라 할지라도, 가해자이자 부양료청구권자의 해당 청구가 당연히 기각되는 것이 아니라, 혼인파탄의 개별적 상황에 비추어 부양료의 지급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이해되는 것이다.

1975년 법은 부양료의 부양적 및 보상적인 이중적 성격을 완전히 분리시키지 못했으나, 2004년 법의 개정을 통해 파탄이혼의 청구자나 유책이혼의 과실 있는 부부 일방에게도 부양료 청구권을 인정하게 되면서 부양료의 보상적 성격은 제거되었고 부양적 성격이 강조되었다. 이후 파기원은 부양료에 있어 연금의 압류금지를 명하면서 이러한 부양적 성격을 재확인했다. 부양료는 이혼시의 상황 및 예측 가능한 장래에 변화될 상황에 대한 고려를 기초로, 부양료지급의무자의 재산과 부양료청구권자의 필요경비에 따라서 산정된다(프랑스민법 제271조 제1항). 그리고 2000년 6월 30일 법, 2004년 법 및 2005년 2월 11일 법을 통해 부양료를 청구하는 경우 또는 이혼의 효과에 대한 협의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부부 각각은 그들의 자산, 수입, 재산과 생활여건에 대한 정확한 신고서를 판사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이 규정되었다(프랑스민법 제272조 및 프랑스민사소송법 제1075-1조). 판사는 이를 기초로 부부 두 당사자의 생활상태의 격차를 고려한 부양적 성격뿐만 아니라, 예측할 수 있는 장래에 부부 각자의 생활의 변화에 대한 고려를 통해 부양료를 산정할 것이 요구된다. 부양료의 산정



기준은 혼인기간, 부부의 건강과 연령, 직업적 상황과 특성, 부부 일방이 상대방의 경력을 위해 자신의 직업적 손실을 감수한 기간 또는 자녀의 교육을 위한 직업적 선택의 결과, 부부재산제청산 후의 수입이나 자산과 같이 가치가 평가된 부부 각각의 재산, 장래 및 현재의 권리, 장래 및 현재의 권리로 인해 부양료 청구권자에게 야기될 수 있는 퇴직금에 대한 권리의 감소 및 산정된 퇴직금에 대한 부부 각각의 상황이 대상이 된다(프랑스민법 제271조 제2항).

2000년 6월 30일 법을 통해 부양료변경청구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가능하게 되었고, 2004년 개정법을 통해서 몇몇 규정들이 추가되어 부양료의 변경청구가 용이해졌다. 그럼에도 부양료의 일시금지급이라는 원칙은 변경되지 않았다(프랑스민법 제270조 제2항). 물론 2004년 법을 통해 부양료지급의무자에게 부양료의 변경청구를 허용했을 뿐만 아니라, 지급의무자가 처한 상황에 변화가 있을 시 일시금지급에 관한 규정의 변경청구 또한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시금의 지급은 최대 8년의 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프랑스민법 제275조).

만약 부양료가 연금의 형태로 지급이 결정되었다면, 채무자인 부양료지급의무자에게 또는 채권자로서 부양료청구권자인 수익자에게 필요경비나 재산상의 중요한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료에 대한 변경, 연기 또는 취소가 가능하나(프랑스민법 제276-3조 제1항), 이러한 변경시에도 부양료의 감액만이 허용된다(프랑스민법 제276-3조 제2항). 또한 채무자로서 부양료지급의무자의 상속인은 언제든지 부양료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프랑스민법 제280-1조 제2항).

협의이혼을 하는 부부의 경우에는 부양료 관련 사항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요구됨은 당연하며, 협의서에 기재된 부양료에 관한 사항이 부부간의 형평에 반한다면, 판사는 이를 승인하지 않는다(프랑스민법 제278조). 승인된 협약서의 부양료에 관한 규정은 법원의 판결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반면 수락이혼, 파탄이혼 및 유책이혼의 경우에는 2004년 법에 따라 부양료는 금전지급(프랑스민법 제274조 제1항 제1호) 또는 사용, 거주 또는 용익에 대한 일시적 또는 종신적 권리 또는 소유재산을 통한 지급(프랑스민법 제274조 제1항 제2호)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도록 개정되었다.

그리고 판사는 법률상 또는 재판상 저장권과는 별개로, 일시금 또는 연금에 대한 보증계약의 작성이나 보증인 또는 질권 설정을 부양료지급의무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프랑스민법 제277조).

부부 일방의 절대적 유책이혼판결의 경우에 상대방은 정신적 또는 물질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프랑스민법은 이러한 **손해배상**에 관한 이중적 규정을 두고 있다. 첫째는 1975년 법에 의해 최초로 규정되고 2004년 법에 의해 개정된 민법 제266조가 규정하는 혼인해소, 즉 이혼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서 이혼소송에 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 둘째는 나폴레옹 민법인 1804년 법에 의해 제정된 민법 제1382조의 과실의 상대방에 대한 일반적 손해배상에 대한 규정이다.

먼저 이혼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로, 파탄이혼의 선고 시에 파탄이혼청구의 상대방이 이에 대한 어떠한 반소제기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유책이혼이 전적으로 부부 일방의 과실로 선고된 경우에는 혼인해소로 인한 특별히 중요한 결과에 대한 배상청구가 이들 상대방에게 허용된다(프랑스민법 제266조 제1항). 손해배상청구는 유책이혼의 경우는 과실 없는 배우자와 파탄이혼의 경우는 파탄이혼청구에 대한 어떠한 반소청구를 제기하지 않은 배우자만이 가능하므로, 협의이혼이나 수락이혼의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이혼으로 야기된 특별히 중요한 결과로서의 손해일 것이 요구되며, 이와 같은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는 부양료청구와도 양립가능하다. 배상청구의 대상으로서의 손해는 물질적인 손해와 정신적인 손해로 구분되며, 물질적인 손해의 경우에는 이혼으로 인한 거주지의 변경에 따른 비용이 대표적인 예이며, 정신적 손해의 경우가 보다 일반적이는데 이혼으로 인한 평판 또는 이혼으로 인한 고통 등의 경우로 이해된다.

반면에 일반적 손해배상의 경우는 누구라도 본인의 과실로 인한 상대방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이해된다(프랑스민법 제1382조). 위 규정은 1999년 11월 9일 헌법위원회로부터 개인의 책임에 관한 일반적 손해배상원칙으로서의 헌법적 가치를 부여받았다.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프랑스민법 제266조)에 해당하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는 이혼 후 언제라도 일반적 손해배상(프랑스민법

제1382조)을 청구할 수 있다. 일반 손해배상은 금전배상이 원칙이다.

## 2. 자녀에 관한 이혼 후의 효과

이혼의 효과로서 자녀를 누가 양육할 것인가는 사실상 이혼에 있어 가장 어려운 문제일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좋은 해결책’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단지 ‘가장 덜 나쁜 해결책’을 모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친권과 관련해 1975년 법은 부모의 이혼 또는 별거시 친권의 부모 일방에 의한 단독행사를 원칙으로 규정했으나, 1983년 파기원은 이혼한 부모의 공동양육에 따른 이증거소가 자녀의 양육 및 교육에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이혼한 부모의 공동양육을 인정함으로써 1975년 법의 친권의 단독행사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정을 하게 되었다. 이어서 1987년 7월 24일 법은 부모의 이혼 시에도 친권의 공동행사를 인정하게 되었고, 1993년 1월 8일 법을 통해 비로소 부모의 혼인이나 이혼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친권공동행사가 원칙이 되었다. 이후의 친권 관련 개정에서도 친권의 공동행사의 원칙을 계수하고 있으며(프랑스민법 제373-2조 제1항), 이에 더해 이혼한 부 또는 모는 본인과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지속뿐만 아니라, 이혼 또는 별거의 상대방과 자녀와의 관계를 존중할 의무 또한 규정하고 있다(프랑스민법 제373-2조 제2항).

이혼한 부모의 친권공동행사는 부모 중 일방의 거소(주거소) 또는 부모 각각의 두 거소(이증거소)를 통해 이루어진다(프랑스민법 제373-2-9조 제1항). 만약 부모가 **자녀의 거소**에 대한 의사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또는 부모 중 일방의 청구에 따라 판사는 정해진 기간 동안 두 부모의 거소를 자녀의 이증거소로 지정할 수 있으며, 기간경료에 따라 판사는 부모 중 일방 또는 부모 모두의 거소에 자녀의 거소를 결정할 수 있다(프랑스민법 제373-2-9조 제2항). 자녀의 거소가 부모 중 일방의 거소(주거소)로 지정된 경우, 판사는 자녀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부모 일방의 면접교섭권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게 된다.

자녀의 복리보호에 필요한 경우에는 이와 같은 **면접교섭**

권은 판사가 지정한 장소에서만 이행될 수 있다(프랑스민법 제373-2-9조 제3항). 만약 자녀의 복리보호에 필요한 경우 또는 부모 일방의 다른 일방에 대한 자녀의 직접적 인도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판사는 이를 위한 모든 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믿을 수 있는 제3자나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서 또는 판사가 지정한 면접 장소에서 위의 인도가 이행될 수 있도록 판사가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프랑스민법 제373-2-9조 제4항). 그리고 부모 일방의 거소 변경에 관한 사항은 거소의 형태와는 관계없이 친권관련사항의 변경 시에 나머지 일방에게 우선적으로 고지되어야 한다. 이혼한 부모의 두 거소를 자녀의 이증거소로 인정한 1983년 파기원의 판결을 시작으로 국적에 관한 1998년 3월 16일 법과 친권에 관한 2002년 법 또한 자녀의 이증거소에 대한 인정을 재확인하고 있다. 실제로 이혼한 두 부모의 거소를 자녀의 이증거소로 지정한 경우의 약 80%가 이혼하는 부모의 공동청구에 의한 것이었으며, 자녀의 거소에 대한 부모의 의견불일치의 경우에는 4분의 1 정도가 부모의 양쪽 거소를 자녀의 이증거소로, 나머지 4분의 3 정도가 부모 중 일방(대부분의 경우 모)의 거소를 자녀의 주거소로 지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2009년을 기준으로 전체 이혼 판결시 미성년 자녀의 부모 양쪽의 이증거소에 관한 결정은 16.9%로 나타났으며,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21.5%에 이르렀으나, 소송이혼사유의 경우에는 4.4%에 그쳤다.

이혼한 부모의 공동친권에 대한 예외로 친권의 단독행사를 결정하는 경우는 자녀의 복리보호의 필요에 의해 제한적으로 인정된다(프랑스민법 제373-2-1조 제1항). 친권행사권을 가지지 못한 부모 중 일방은 자녀의 교육 및 양육에 대한 감독에 대한 의무와 권리를 가지며(프랑스민법 제373-2-1조 제5항), 위의 부모 일방의 면접교섭권은 심각한 사유가 아닌 한 인정된다(프랑스민법 제373-2-1조 제2항).

친권을 공동행사하는 부모 중 일방의 사망시에는 나머지 일방에게 친권이 귀속된다(프랑스민법 제373-1조). 만일 친권을 단독행사하고 있는 별거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친권은 나머지 일방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지만(프랑스민법 제373-3조 제1항), 이러한 자동적 귀속은 자녀의



복리보호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판사는 예외적으로 자녀의 복리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그의 혈족 중 일인에게 친권의 귀속을 결정할 수 있다(프랑스민법 373-3조 제2항). 별거한 부모의 친권관련사항을 결정하는 가정법원판사는 별거한 단독친권행사자의 사망시 특별한 사정의 경우에 생존한 나머지 부 또는 모에게 위의 친권을 귀속시키지 않을 수 있다. 또한 판사는 위의 경우에 자녀의 일시적 위탁을 책임질 자를 지정할 수 있다(프랑스민법 제373-3조 제3항).

**자녀의 교육 및 양육비**에 관한 부모의 의무는 생활비(생계비)의 지급을 기초로 한다. 자녀와 부모의 별거의 경우이든 부모 사이의 별거이든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관한 비용은 생계비, 즉 부양료의 형식을 띠므로, 부모 중 일방이 나머지 일방 또는 자녀를 위탁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프랑스민법 제373-2-2조 제1항). 부모가 합의한 경우에는 판사의 승인으로, 부부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판사의 결정에 따라 부양에 필요한 양육 및 교육비가 산정되며, 결정된 양육비는 자녀의 필요비용이나 양육비부담의무자인 부 또는 모의 재산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그리고 양육비에 대한 담보제공이나 관련사항은 부모의 합의를 판사가 승인하거나 또는 판사가 결정함에 따라 정해진다(프랑스민법 제373-2-2조 제2항). 양육비는 양육비부담의무자인 부 또는 모에 의한 직접지불의 형태로도 가능하며(프랑스민법 제373-2-2조 제3항), 이와 같은 양육비부담은 부 또는 모의 소유인 거소의 거주 또는 사용의 형태로 대체될 수 있다(프랑스민법 제373-2-2조 제4항). 그리고 자녀의 친권에 관한 사항과 마찬가지로 판사는 직권으로 자녀의 양육 및 교육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수정 또는 보충할 수 있다(프랑스민법 제373-2-8조). 부모 각각은 본인들 또는 상대방의 재산 상태나 자녀의 필요경비에 따라서 양육 및 교육비를 지급하며(프랑스민법 제371-2조 제1항), 이러한 의무는 자녀가 성인인 경우에도 완전히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프랑스민법 제371-2조 제2항), 판례는 자녀의 고등 교육이나 혼인 또는 실업의 경우에도 양육비 지급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경제적 독립이 불가능한 성년자녀의 생활비용을 원칙적으로 부담하고 있었던 부모 중 일방이 위의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다른 일방에게

위의 비용의 부담을 청구할 수 있다.

#### IV. 마치며

‘혼인은 후유증을 남긴다.’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 프랑스민법상 이혼은 단순히 혼인의 해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으로 파생된 모든 결과물에 대한 정리 또한 요구하고 있다. 배우자의 성의 사용권을 비롯해, 부부재산제의 청산, 증여 및 혼인급부, 퇴직금 및 연금, 혼인 거소, 부양료, 손해배상에 이르는 부부 사이의 이혼 후의 결과와 친권 및 양육과 관련한 사항, 자녀의 거소, 면접교섭권, 양육비 지급의 자녀에 대한 사항까지 포함된다.

최근 프랑스 사회에서 협의이혼은 전체 이혼의 약 55%, 유책이혼은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 2000년대 초기의 낮은 협의이혼율은 최근 절반 이상까지 증가하였고, 40%였던 유책이혼율은 최근 현저히 감소되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사회적 상황이나 사회의식의 변화나 세대교체를 원인으로 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이혼법에 대한 개정, 특히 협의이혼을 간이화하는 지속적인 개정 작업과 분쟁적 이혼사유인 수락이혼, 파탄이혼 및 유책이혼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협의이혼으로의 전환이나 부부의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협의서의 작성을 촉진하는 방안에 대한 결과물로 볼 수 있다.

게다가 가장 최근의 2016년 개정을 통해 법원에 가지 않고도 협의이혼까지 가능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방식의 협의이혼이 잘 운용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사회가 남녀의 의식, 경제 또는 교육의 수준에 차이가 없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의 시행은 곧 현재의 프랑스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또 다른 지표가 될 것이다. 마치 계몽사상과 프랑스혁명의 정신이 1792년 법을 통해 가톨릭 교회가 금하던 이혼제도를 프랑스 사회 최초로 법제화했고, 왕정복고로 인해 이혼법은 1816년 프랑스민법에서 삭제되었으며, 약 70년 후인 1884년 이혼에 대한 사회적 요구로 이혼법이 민법에 재편입되었고, 이혼사유의 다양화, 이혼 절차의 간이화 및 이혼 후 갈등의 감소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975년, 2004년 및 2016년 개정을 통해 이혼법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 기/획/연/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00년을 향해 22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민국 법률구조의 역사\*\*

## 1986년, 창립 30주년의 해

### - 법률구조 사업의 확산 (1)

|          |                            |
|----------|----------------------------|
| 1984년 9월 | 교육원 개원                     |
| 1985년 5월 | 상담소의 노래 (고은 작사, 김순애 작곡) 제정 |
| 1986년 2월 | 격월간으로 발행되던 <가정상담>을 월간으로 발행 |
| 4월       | 맞벌이 부부와 영세민 자녀를 위한 어린이집 개소 |

#### 창립 30주년 기념사업

1986년 10월 5일로 창립 30주년을 맞은 상담소는 지난 30년 동안의 눈부신 역사와 업적으로 토대로, 새로운 30주년을 향한 출발과 행진을 선언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30년이란 한 세대의 끝과 새로운 세대의 시작을 의미하는 숫자이기 때문이다. 외형적으로는 건평 9백여 평에 달하는 벽돌집 한 채와 통계적으로는 23만 명을 웃도는 내담자들이 이곳을 다녀갔다.

그러나 30주년을 맞는 상담소는 '쪽박으로 한강물을 퍼내던 사업'에서 '사랑의 댐으로 한강물을 막고 에너지를 충전시켜 전국 방방곡곡의 심장에 부활의 힘을 가동시키는 꿈'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 정지사업으로 1986년 1월 16일의 정기 이사



회에서는 방대한 분야에 걸친 30주년 기념사업 즉 <조사연구사업> <심포지엄> <회원대회> <전시회> <바자> <기념출판> <무료탁아소개소> <기록영화제작> <기념연극공연> <외조공로상 제정> <가정현장제정 및 선포> <가족법개정 촉구>

\*\* 상담소는 지난 2016년을 창립 60주년의 해로 보내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구조 기관으로써 자부심을 가지고 백년을 향해 나아간다는 전망을 세운 바 있다. 이러한 전망의 토대로 삼고자 상담소의 역사를 바로 알고 널리 알리기 위해 상담소의 연대기를 연재한다. 상담소는 지난 2009년 「변민하는 이웃과 함께-한국가정법률상담소 50년사」를 펴낸 바 있으며, 이 연재는 이를 기초자료로 하였다.



〈법률부조법 제정촉구〉<sup>1)</sup> 〈가정법원의 전국설치 촉구〉 등을 1986년 한 해 동안 전개하기로 하고 차근차근 실천해 나갔다.

## 건의문 및 결의문 채택

1986년 5월 13일 개최된 회원대회에서는 가정의 민주화와 여성의 인간화를 실현해 가는 길에 반드시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위하여 결의문과 건의문을 채택하고 선포하였다.

다음은 이날 채택된 건의문 및 결의문의 전문이다.

### 가정법원 전국 설치에 관하여

1963년 제정된 가사심판법과 가정법원조직법에 의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서울에 가정법원이 설치되었다.

가사사건은 일반 민사사건과는 달리 가족 및 친족 간의 분쟁이므로 그 특수성에 비추어 비공개, 조정 전치 등을 원칙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가정법원은 1963년 이후 전국 어느 곳에도 증설되지 않아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은 부당하게 차별을 받고 있다.

이는 법 앞에 만인평등의 원칙을 선언한 헌법과 가정법원의 전국 설치를 천명한 법원조직법이나 가사심판법을 위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최소한 전국의 지방법원 소재지 만이라도 가정법원을 조속히 설치할 것을 촉구한다.

### 법률부조사업법 제정에 관하여

가난하고 법을 모르는 국민에 대한 법률부조사업은 국가적 차원에서 수행해야 할 민주 법치 국가의 중요한 과제의 하나이다. 따라서 세계 선진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국가의 정책으로 법률부조기관을 설치 운영하며 민간단체가 이 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재정적 지원과 지도, 감독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법률구조협회만이 국가 예산으로 이 사업을 벌여나갈 뿐 개인이나 민간의 임의적인 설치 운영은 방임된 상태이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개인이나 민간단체의 임의적인 설치

운영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상담소와 같은 법률부조사업 기관의 설치 근거를 법으로 정하고 국가 예산을 책정하여 지원함으로써 법률부조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시켜야 할 때이다. 그리하여 법의 보호로부터 외면당하는 억울한 피해자가 없는 정의로운 사회를 이룩하기 위하여 하루 속히 법률부조사업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 가족법개정에 대하여

1. 정부는 인간의 존엄성과 법 앞에 만인평등의 원칙을 선언한 세계인권선언과 남녀평등의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현행 가족법의 개정을 1990년대로 미루지 말고 하루 빨리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1. 국회는 전 인구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여성의 오랜 숙원인 가족법개정문제에 대하여 그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태도로 이를 다루어 하루 빨리 개정할 것을 여성 유권자의 이름으로 촉구한다.

1. 우리는 우리가 오래 전부터 주장해 온 모든 항목의 가족법개정이 실현될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가족법개정운동을 계속 전개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 어린이의 집 개원

3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상담소는 1986년 4월 1일 맞이일이 부부 가정, 한부모 가정 및 영세 가정의 자녀를 위해 설립한 무료 탁아소 ‘어린이의 집’ 개원식을 가졌다.

이 날 개원식은 예쁘고 깨끗하게 꾸며 놓은 아가들의 방에서 열렸는데, 초록색 가운을 차려 입은 30명의 어린이가 부모와 상담소 어른들의 축하를 받았다.

### 〈가정현장〉 제정

이태영 소장은 1986년 〈가정상담〉 1, 2월 합병호에서 신년 메시지를 통해 신년 사업계획 중 다음과 같이 가정현장 제정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여섯째는 가정현장의 선포입니다. 이미 〈어머니 현장〉

1) 법률부조는 일본식 용어로 이후부터 현재는 ‘법률구조’로 쓰고 있으나 당시 기록을 그대로 살려 이 부분에서는 ‘법률부조’라고 쓴다.

과 <노인현장> <어린이 현장>이 선포되었습니다만 가정문제를 30년 동안이나 들여다보고 그 치료에 전력을 기울여 온 상담소로서는 이제 우리가 미래 사회를 지향하는 이상적인 가정상을 제시할 때가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가정현장’ 제정 및 선포는 1986년 5월 15일 창립 30주년 회원대회에서 갖기로 하였다. 지난 30여 년 동안 한국의 문제 가정을 들여다보며 진단하고 치료해 온 상담소로서는 그 30년 동안의 경험과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오늘날 우리 사회가 맞이하고 있는 가정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써 미래에도 그 타당성을 잃지 않을 가정현장을 제정하자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6명의 현장위원이 위촉되었는데 위원들은 상담소 이태영 소장을 비롯하여 이화여대 사회학과 이효재 교수, 서울대 서양사학과 이인호 교수, 서울대 사회학과 한완상 교수, 한국일보 문화부 장명수 부장, 연세대 사회학과 조혜정 교수로 이들이 팀을 이뤄 기초 작업에 들어갔다. 즉 6명의 현장기초위원회는 5월부터 월 1회 토론을 벌인 후 각자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였고 이 모든 의견을 장명수 위원이 수렴하여 초안을 작성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그리고 10월 7일 창립 30주년 기념식에서 이효재 현장위원이 이러한 과정을 거쳐 준비한 가정현장을 선포하였다.

## 가정현장

1

결혼은 성인 남녀의 사랑과 존경을 바탕으로 하여 성립되며, 두 사람의 행복과 인격적 성숙을 위해 협동하는 관계로 이어져 가야 한다. 결혼은 혈통만의 이름이나 가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으며, 결혼 당사자의 선택이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2

가정은 가족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민주적 생활공동체이다. 부부관계와 부모자녀관계는 권위주의적인 상호관계나 어느 한쪽의 희생에 정당화하는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가족은 가정이라는 생활공동체 안에서 인간에 대한 존엄과 사랑을 배우고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실천함으로써 자신의 인간성을 실현하고 더 나아가서는 민주사회를 이루는데 기여해야 한다.

3

자녀의 출산과 양육은 사사로운 개인의 일이 아니다. 이는 사회의 유지와 번영을 위한 공적이고 역사적인 숭고한 기능이므로 부부는 출산과 양육의 의무를 더욱 신중하고 충실하게 준수해야 하며 국가와 사회는 임신·출산·양육에 따르는 책임을 가족과 나누어 져야 한다.

가사노동은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하며 그 대가는 한 가정의 재산 형성이나 분배 등에서 제 몫을 인정받아야 한다.

4

이제 세계는 하나의 가정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현 시대가 안고 있는 온갖 긴장과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지구를 지키고 함께 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세계 가족들은 가족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를 이룩하는 일에 힘을 모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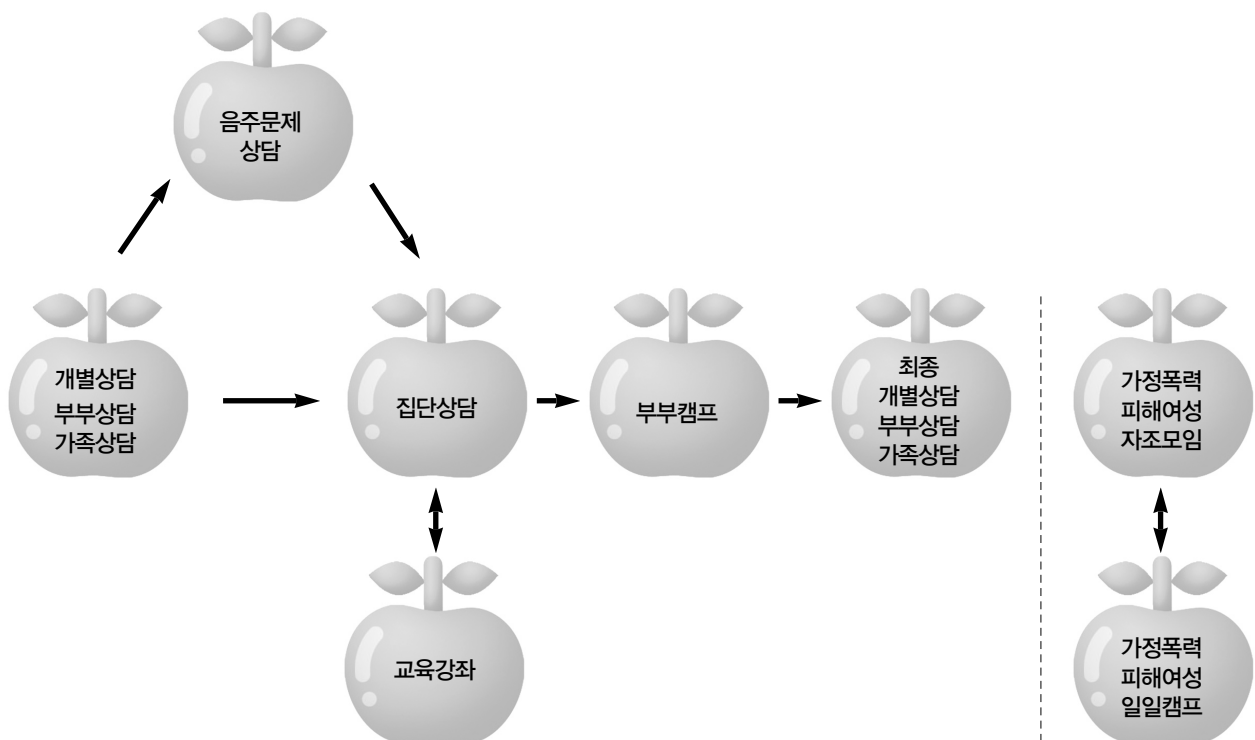
1986년 10월  
사단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편집부



가정 폭력의 예방과 근절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욕구와 동기에 맞춰 단계별로 진행

본소는 가정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서 가정폭력피해자 상담 및 구조, 지원과 함께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교정을 위한 상담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가정폭력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폭력피해자와 행위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각자의 욕구와 동기에 맞추어 단계별로 진행하고 있다. 2020년에 진행될 본소의 가정폭력 관련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 I. 개별상담/부부상담/가족상담

폭력에 대한 책임 및 인식 개선, 가정폭력 행위자 및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접근과 더불어 가족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부부갈등의 원인을 파악하고 폭력재발방지 및 갈등해결 방안 모색

- ▶ 일 시 : 연중
- ▶ 대 상 : 가정폭력 행위자 및 피해자
- ▶ 진 행 : 본소 상담위원

## II. 음주문제 집단상담

가정폭력 행위자의 음주문제를 진단하고 절주나 단주 등 대처방안을 다각도로 모색, 음주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상담 및 교육

- ▶ 일 시 : 연 4회(각 4회기, 매회기 2시간)

|        |                                                                                                                                                                      |
|--------|----------------------------------------------------------------------------------------------------------------------------------------------------------------------|
| 날짜     | 1회 : 3/4, 3/11, 3/18, 3/25 (4회기)<br>2회 : 5/13, 5/20, 5/27, 6/3 (4회기)<br>3회 : 9/2, 9/9, 9/26, 9/23 (4회기)<br>4회 : 11/4, 11/11, 11/18, 11/25 (4회기)                      |
| 회기별 주제 | 1회기 : 변화가 필요해<br>- 알코올 문제로부터 변화 필요성 인식<br>2회기 : 변화하겠어!!<br>- 변화단계, 변화의 이득과 손실<br>3회기 : 변화가 쉽지 않네요<br>- 가치체계 점검, 강점과 대안 찾기<br>4회기 : 변화 열망 강화하기<br>- 미래계획, 성공방법과 정보 공유 |
| 시간     | 음주문제 피해자 오후 1시 30분 ~ 3시 30분<br>음주문제 행위자 오후 3시 30분 ~ 5시 30분                                                                                                           |

- ▶ 대 상 : 음주문제가 폭력 및 부부 갈등의 원인이 되는 행위자 또는 피해자
- ▶ 진 행 : 권금주 교수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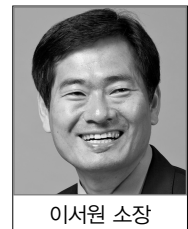
권금주 교수

## III. 집단상담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 가정폭력에 대한 법적 책임 인식, 집단성원들과의 토론 및 상호 피드백을 통해 가정폭력의 문제를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해결방안 모색 · 공유

### 집단상담 ①

- ▶ 일 시 :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30분 ~ 9시 30분
- ▶ 대 상 : 가정폭력 행위자
- ▶ 진 행 : 이서원 소장(마음편한상담소)



이서원 소장

### 집단상담 ②

- ▶ 일 시 :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30분 ~ 9시 30분
- ▶ 대 상 : 가정폭력 행위자 및 배우자(부부)
- ▶ 진 행 : 정윤경 교수  
(연세솔루션상담센터)



정윤경 교수

- ▶ 진 행 : 김희진 교수  
(명지대학교 방목기초 교육대학)



김희진 교수

### 집단상담 ③

- ▶ 일 시 : 필요시
- ▶ 대 상 : 가정폭력의 문제가 있는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부부 외 가족구성원

#### IV. 등지고실

나와 가족의 정신건강과 행복한 가족관계형성을 돕는 교육강좌

- ▶ 일 시 : 매월 둘째 목요일  
오후 3시 ~ 5시
- ▶ 대 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 ▶ 진 행 : 황순찬(사회복지학 박사,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외래교수)
- ▶ 일정 및 강의제목



황순찬 박사

| 일 정     | 강 의 제 목                         |
|---------|---------------------------------|
| 2월 13일  | 모든 정신적 어려움의 근원, 성격장애            |
| 3월 12일  |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만드는 분노조절 및 충동조절 장애 |
| 4월 9일   | 극단적 선택을 초래하는 기분장애               |
| 5월 14일  | 안정된 삶을 방해하는 불안 및 공황장애           |
| 6월 11일  | 현실을 왜곡하고 관계를 파괴하는 망상장애          |
| 7월 9일   | 가정을 무너뜨리는 중독문제                  |
| 9월 10일  | 시간을 넘어서 고통을 지속시키는 트라우마 관련 장애    |
| 10월 8일  | 잃어버린 자아를 찾아서<br>- 정신증(조현병과 조울병) |
| 11월 12일 | 몸이 기억하는 고통, 신체 및 수면장애           |
| 12월 10일 | 건강한 삶의 근원을 만드는 아동기 정신건강         |

#### V. '나, 너, 그리고 우리' 행복찾기 부부캠프

부부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여 부부화합을 도모하는 1박2일 숙박프로그램

- ▶ 일 시 : 연 2회, 2020년 4월 11일(토) ~ 12일(일) /  
11월 14일(토) ~ 15일(일)
- ▶ 대 상 : 사전에 가정폭력 관련 프로그램에 참석한  
부부
- ▶ 자녀들을 위한 별도의 미술치료 프로그램 운영

#### VI. 라오니 모임(가정폭력 피해여성 자조모임)

가정폭력 피해여성이 서로에게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며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가도록 도움을 주는 자조모임

- ▶ 일 시 : 매월 첫째, 셋째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 13시 30분
- ▶ 대 상 : 가정폭력 피해여성
- ▶ 진 행 : 장희숙 교수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장희숙 교수

#### VII. 라오니 캠프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일일 캠프)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지속적인 역량강화와 폭력에 대한 대처능력 향상을 도모하는 일일 캠프

- ▶ 일 시 : 연 1회, 2020년 12월 5일(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 7시
- ▶ 대 상 : 가정폭력 피해여성

박소현 법률구조 2부장



Q ▶▶▶

저는 북한에서 탈출하여 한국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입니다. 남편은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중국에 장사하러 간다고 집을 나간 후 연락이 두절되었고, 저 또한 북한에서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워 남편을 찾기 위해 중국으로 갔다가 남편을 찾지 못하고 한국에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연락이 두절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한국에서라도 가정을 이루며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북한의 남편과 이혼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제19조의2에서 북한에 배우자를 둔 북한이탈주민의 이혼 절차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으로 북한에 배우자를 둔 사람은 그 배우자가 남한에 거주하는지 불명확한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위법 제19조의2). 이와 같이 이혼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배우자가 북한에 남아 있어 보호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통일부장관의 서면을 첨부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여야 합니다(위 법 제19조의2 제3항).

이를 위해 이혼을 청구하는 자는 배우자의 보호 결정 여부 확인 신청서(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4 서식)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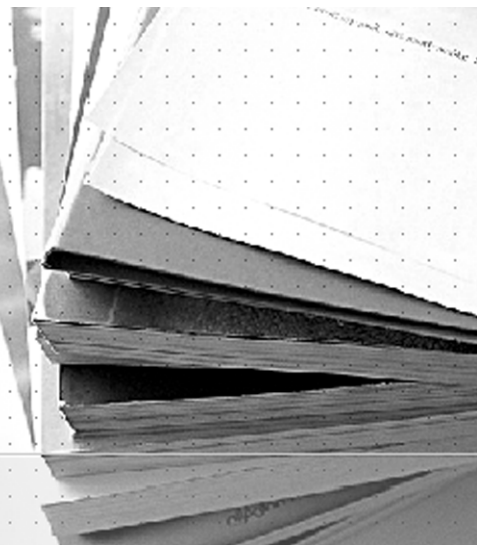
우 서류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위법 시행규칙 제3조의5 제1항). 통일부장관은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서(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5 서식)를 발급합니다(위법 시행규칙 제3조의5 제2항).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귀하는 북한의 배우자와 이혼할 수 있습니다.

조은경 상담위원



## 좋은 책



얼마 전 보았던 미국 드라마 두 편은 충격적이었다. 두 가지 다 미국 경찰 드라마였는데 성범죄 전담반 드라마에서는 미국 중산층 가정에서 자녀 대학입시를 위해 엄마들이 자녀들의 자기소개서를 위해 각종 특별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 여기까지는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 화제가 되었던 드라마나 아직도 뉴스를 장식하는 정권 고위층 소식에서도 익히 보아서 이제는 상당히 익숙해졌다 – 대학 입학사정관에게 성상납까지 하게 되는 상황이었다. 또 다른 하나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형제가 길거리에서 흔히 정글도라 불리는 무시무시한 칼 마체테를 휘두르며 사람들을 공격하는 이야기였는데, 그 배경이 씁쓸하고 슬펐다. 삼형제는 일찍 부모를 잃고 큰 형이 어렵게 동생들을 키웠는데 막내가 마침내 대학에 입학하였고 이를 축하하기 위해 모처럼 클럽에 갔다가 클럽 앞에서 형들의 희망이었던 막내가 총격 사건의 피해자가 되었던 것이다. 문제는 형들이 총에 맞은 막내를 품에 안고 9번이나 911에 전화를 걸었지만 911은 겨우 통화한 지 27분 만에야 출동하였고 그 사이 막내는 숨을 거두었던 것이다. 형들은 그 클럽이 부자 동네에 있었다면 911이나 경찰의 대응도 달라졌을 것이라며 이 같이 충격적인 사건을 벌였던 것이다.

이 사건을 해결하면서 FBI 요원 하나가 씩씩하게 말했다. “우편번호가 사는 형태를 규정한다지” 바로 이 말이 이 책 『부당세습』에 그대로

등장한다. 책의 part 6 제목 자체가 ‘황금빛 우편번호’이고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계층의 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 파트의 마지막 부분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한다. “우편번호로 드러나는 주거지는 우리의 정체성을 대변한다. 우리의 스타일을 정의하고, 우리의 가치를 알리고, 우리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우리의 재산을 지키고, 우리가 그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게 한다. 우리는 그러면서 서서히 경제의 목을 조르며, 민주주의를 말살한다.” 바로 그렇다. 자본주의의 본고장 미국의 이러한 현실이 대한민국에서도 똑 같이 펼쳐지고 있다.

저자 매튜 스튜어트는 철학자이자 저술가로 옥스퍼드 대학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9.9%에 속한 자신이 새로운 귀족 계층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이 시대의 불평등에 대해 짧지만 굵고 깊게 이야기를 전개하였다. 책의 해제를 맡은 이상헌 국제노동기구 고용정책국장은 ‘누가 이 불평등의 폭주를 멈출 것인가’라는 제목의 해제에서 첫 단락의 작은 제목을 ‘불평등 : 말의 성찬, 답보하는 정책’이라고 썼다.

이 책을 읽으며 내내 나는 떠올랐다. 말의 성찬,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말의 향연, 이러한하기를 바라지만 지금은 슬프게도 비웃음이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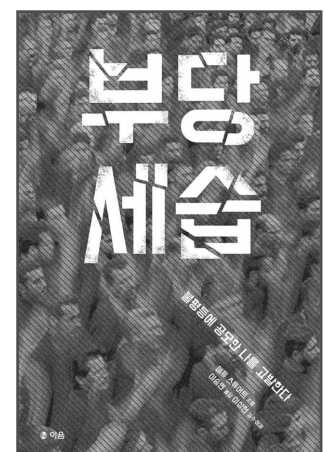
이 숙 현 편집부장

## 부당세습

불평등에 공모한 나를 고발한다

매튜 스튜어트 지음  
이승연 옮김 이상헌 감수 해제

이음, 2019



결혼과 인생 (204)



## 결혼 이야기

감독 노아 바움백

출연 스칼렛 요한슨, 애덤 드라이버, 로라 던, 알란 알다



젊은 부부가 이혼을 한다. 〈결혼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한다. 사랑에 빠져 결혼하고 위기를 겪는 것이 보통 가족 드라마의 줄거리일 텐데, 이혼을 결심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영화라니, 대체 어떻게 이어가려고? 놀랍게도 〈결혼 이야기〉는 137분이라는 러닝 타임 동안 법적으로 완전히 남남이 되기까지의 과정이 얼마나 처절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는지, 어느 쪽에도 완벽한 해피엔딩이란 건 존재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새로운 인생에 적응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얼마나 노력해야 하는지에 대해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고 쓰디쓴 이야기를 들려준다.

니콜(스칼렛 요한슨)과 찰리(애덤 드라이버)는 막 이혼을

결심했다.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 난 원수가 된 건 아니다. 둘 사이엔 여덟 살 난 아들 헨리도 있다. 최대한 아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좋은 방향으로 끝내고 싶다. 그런데 결국은 양육권이 문제가 된다. 니콜은 변호사 노라(로라 던)와 이혼 소송 상담을 하며 지난 결혼 생활을 돌이켜본다. 할리우드의 전도유망한 배우였던 니콜은 정말 우연한 기회에 뉴욕에서 언더그라운드 연극을 한편 보았고, 연출자 찰리와 불같은 사랑에 빠져 때 이른 결혼을 결심했다. 조혼에 가까운 결혼이며 자신의 삶의 터전이었던 LA를 떠나야 한다는 상황도 사랑에 빠진 니콜에게 별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는 찰리의 극단 주연 배우가 되었고, 기꺼이 극단을 위한 홍보 모델이 되었으며, 점차 명성을 얻기 시작한 찰리의 성공을 함께 기뻐했다. 하지만 10여 년이 지난 지금, 니콜은 좌절을 느끼고 있다.

로버트 벤튼의 〈크레이머 대 크레이머〉(1979년)의 21세기 버전이라고 해야 할까. 다만 〈크레이머 대 크레이머〉는 영화의 배경이 되는 페미니즘의 폭발적인 성장에 다소 반동적인 태도를 취하며, 메릴 스트립이 연기한 아내가 갑자기 이혼을 통보하고 집을 떠난 뒤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양육권을 ‘빼앗으려’ 하는 일종의 악역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점이 〈결혼 이야기〉와의 결정적인 차이다. 〈결혼 이야기〉의 니콜은 연인이자 동료로서 찰리와 예술적 비전을 공유했



고, 그 결과 찰리가 점점 더 성장하는 모습에 진심으로 행복해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이 함께 고민하고 성과물로 만들었던 작품들에서 '배우'인 니콜보다 '연출자'인 찰리의 이름이 더 빛나게 등장했다. 찰리는 니콜과 결혼하던 당시 뉴욕과 LA를 오가며 지낼 수 있다고, '언제 한번' LA에서 살 수도 있다는 막연한 약속을 했지만 그 말은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다. 찰리는 그의 비전이 통용되는 뉴욕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터전이라고 믿었고, 니콜 역시 여기에 당연히 동의한다고 믿었다. 니콜은 점점 거기에 동의하기 어려워졌다. 그는 찰리만의 배우가 아니었고, 배우이자 동시에 연출자로서 자신의 영역을 확장시키고 싶다는 야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찰리와의 이별을 선언해야만 했다. 어느 한쪽만 양보한다는 생각이 싹트기 시작하는 순간, '함께'라는 믿음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가족에 대한 환상으로부터 탈출하려는 욕망이 생긴다. 그리고 찰리는 니콜의 그런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끊임없이 왜 나한테 이런 번거로운 상황이 발생했는지에 대해 묻지만, 그 답은 자기연민에서 찾을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었다.

서로 사랑하면서도 미워하고, 어떤 경우에는 양보와 타협만이 절대적인 미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하며 이별을 선택하는 젊은 부부의 이야기. 그들은 같은 곳을 바라보

고 있다고 믿었지만 그에 이르는 여정의 방식이 아주 달랐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다. 포기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들이 경험하는 지질하고 구차한 단계들을 지나고 나서야, 각자는 아주 약간 성장한다. 노아 바움백과 스칼렛 요한슨, 애덤 드라이버가 선사하는 '결혼과 이혼'이라는 소우주가 압도적인 경험으로 다가오는 이 영화를 놓치지 마시길.

김용언 영화 칼럼니스트





## 실무수습 소감문

##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실습을 마치고

상담소는 법교육의 일환으로 법학과, 사회복지학과, 법학전문대학원생, 사법연수원생 등에게 다양한 임상실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본 상담소에서 지난 1월 13일부터 2주간 실무수습을 한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소감을 싣는다.

## 김 시 온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

곧 3학년이 되는 마당에 시간을 쪼개 공부를 하기는 커녕 가정법률상담소에서 인턴을 한다고 하니 친구들은 의아해 했다. 가족법 수업을 나서서 수강하지도 않았고, 가정문제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보인 적도 없던 나였으니 그럴 만도 했다. 하지만 나에게는 학부시절 1년여 동안 범죄피해자 보호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끊임없이 곱씹던 마음가짐을 환기할 필요가 있었다. 애초에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게 된 계기는 이웃들의 삶에 도움이 되고 싶은 데 있었으나, 입학 후 2년의 세월 중에는 삶의 무게를 느끼기보다는 법서들의 무게에 짓눌려온 시간이 더 많았던 것이다.

실무수습의 시작을 알리는 첫날 아침 회의 기도시간부터 내 마음은 일렁이기 시작했다. 하나님께 공부를 위한 지혜를 달라는 기도는 매일 하면서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불행한 자, 약자를 돕기 위한 지혜를 구한 적이 있던가. 그러나 가정법률상담소에서의 업무를 위해 그런 지혜가 가장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매일같이 쏟아져 들어오는 상담문의들은 어느 하나 가 법다고 할 수 없는 고민들의 집결체였다. 그 문의들에 대한 법률적인 측면에서의 답변을 바쁘게 메모하다가도 어느새 내담자들이 고민하는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를 나지막하게 기도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곤 했다.

특히나 자신의 별이만으로는 동생의 병원비조차 감당하

기 어려움에도 아픈 동생을 끝까지 보살피겠다며 성년후견 개시를 신청하러 왔던 노인이 기억에 남는다. 동생이 수술을 하게 될 때나 병원비를 내기 위해 수급비 통장을 관리할 때면 매번 몇 단계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했다. 한 통으로는 모자랄까 서류들을 두 통씩 떼어왔음에도 누락된 서류들이 있음을 알게 되자 “그냥 포기할까 봐요, 동생녀석 보살피는 것도 왜 이리 힘든 지요”라며 한숨을 푹 내쉬었다. 그 한숨에 담긴 변민의 깊이가, 그리고 법의 적용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느끼는 법과의 거리가 그가 바리바리 싸온 동생의 의무기록 두께만큼이나 깊게 느껴져 어깨가 절로 무거워져 왔다.

몇 시간에 걸쳐 필요한 정보들을 물어 가며 성년후견심판 개시청구서를 다시 작성하고 누락된 서류들을 발급받았다. 두꺼운 책 한 권이 될 법한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한 뒤에야 그의 얼굴에는 웃음이 번지기 시작했다. 여전히 힘들지만 조금씩 더 나은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믿음이 그를 지탱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 웃음을 보면서 법률가를 꿈꾸던 첫 마음이 회복되는 것이 느껴졌다.

나에게는 특별할 것이 없는 법률서류가 누군가에게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 된다는 점은 한편으로는 감사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일이었다. 가정법률상담소에서 소장이나 입법보고서, 파산서류 등의 서면을 작성하면서 스친 삶의 무게들,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을 소중히 간직하겠다. 오늘도 이웃들의 변민을 함께 나누어 메는 선생님들께 감사와 응원을 보낸다.

## 송 성 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실무수습생으로서 발을 디뎠을 때의 첫인상은 향기가 참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실무수습을 온 동기들과 ‘무슨 디퓨저를 쓰시는 것인지 궁금하다’는 농담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학부에서 가족법을 배운 적은 있으나 로스쿨에 입학한 후 실무수습이 처음이라 많이 긴장을 했었는데, 좋은 향기와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상담위원님들 덕분에 편안한 마음으로 실무수습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2주라는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생각보다 많은 것을 해볼 수 있었던 알찬 실무수습이었습니다. 주·야간에 상담소에 직접 방문하는 내담자분들의 상담을 참관하고, 이혼 소장과 파산면책 신청서, 사이버 상담의 답변을 작성해보기도 하고, 가정법원을 견학하기도 하고, 가정법률상담소에서 할 것이라 생각지 못했던 양형 기준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는 등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가족법과 관련된 실무에 대해 배울 수 있어 매우 뜻깊었습니다.

특히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단순히 형사사건과 동일시하여 가해자에 대한 엄벌로 폭력을 근절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가정폭력 가해자 집단상담을 참관하고 또 가정폭력의 현실과 관련되어 선생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그렇게 가정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를 단순히 이분하여 해결하기에는 가정폭력 문제가 매우 복잡하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을 정당화할 수는 없고, 피해자 보호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가정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도 가정의 구성원이라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보고서에는 현

행법과 개정안에 대해서 나름의 검토의견을 적었지만, 저로서는 앞으로도 계속 고민해나가야 할 숙제를 안게 된 것 같습니다. 다만 가정폭력 관련 문제에 대해 단순하게 비난과 법적 제재의 관점에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과 이해의 대상으로서 접근한다는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된 점이 저에게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실무수습을 마친 지금,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향기는 그곳에 계신 구성원분들의 따뜻한 마음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마다의 힘들고 가슴 아픈 사정을 안고 찾아온 분들이 법률적 도움 뿐 아니라 공감과 위로를 받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조금이나마 편안한 분위기에 서 상담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만들어낸 향기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저 역시 기계적으로 법을 적용하는 전문가가 아니라, 타인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을 바탕으로 두는 향기로운 변호사가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하며 실무수습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주 동안 함께 했던 실무수습 동기들에게, 또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며 친절하게 가르쳐주신 상담위원님들과 변호사님을 비롯한 상담소 구성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값진 배움의 기회를 주신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감사드립니다.

## 김 서 연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

### ‘번민하는 이웃과 함께’

실습 첫 날 시청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개 영상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문구입니다. 그리고 2주간의 실습을 마친 지금, 가정법률상담소에 찾아오는 분들과 이 곳이 하는 일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번민’이라는 말에는 가사소송만의 복잡함이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번민이란 마음이 번거롭고 답답하여 괴로워

하는 상태라는 뜻인데, 소송을 고민 없이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특히 가사소송은 혈연 혹은 혼인으로 맺어져있는 가족이라는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과 법정에서 마주보아야 하기에 이 곳을 찾는 분들은 상당히 어려운 결단을 내리신 듯 보였습니다. 내담자분들 뿐 아니라 상담위원님들과 변호사님들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한 번 더 고민하신 후 법적 조언을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과제로 20대 국회에서 발의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안 현황 보고서를 작성했었는데, 이 법률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면 좋을지에 대한 제언 부분을 작성하다 일반 폭행과 같은 선상에서 바라볼 수 없는 ‘가정폭력’의 특수성 때문에 많이 고민했던 기억이 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가 가족 구성원이기에 가해자를 무조건 처벌하는 것만이 피해자를 위한 길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고, 현실적으로 가해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이 결국 피해자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일도 있다 하여 방향을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곳에서 일하시는 상담위원님, 변호사님께서 늘 이런 고민과 책임감을 감당하며 법률구조활동에 임하시는구나 싶어 존경스럽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이웃과 함께’ 하기 위해 정말 많은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무수습을 오기 전에는 그저 가사소송에 대해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잠시나마 구성원이 되어보니 파산·면책 지원 및 가족법 개정운동, 의식 변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가정법원 출장상담, 양형기준 의견서 제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며 가정문제로 힘들어하는 이들을 돕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참여했던 활동 중에서는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의견서 작성이 제일 기억에 납니다. 양형기준을 양형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 의견서를 제출한다는 것

도 처음 알았을 뿐더러 양형기준의 개선방향을 제시해보는 것 또한 새로운 경험이었기 때문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후 처음 참여하는 실무수습이라 첫 날을 앞두고 3시간밖에 자지 못했을 정도로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상담소의 모든 분들께서 저희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2주간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구성원이 되어 법률구조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상담위원님들과 변호사님! 많이 신경써주시고 잘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곳에서 보고, 듣고, 느꼈던 모든 것들을 잊지 않고 항상 변민하는 이웃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법조인이 되겠습니다.

## 유 예 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

1년간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공부하며 가장 재미있게 배운 과목은 가족법이였다. 이혼과 상속에 대해 호기심이 많아 서이기도 하지만, 민법, 형법과는 달리 매우 친숙하고 생활 밀착형 사례를 통하여 법리를 배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공부하면서 실제 기록을 보고, 실무상 문제를 해결해나가고 싶은 마음이 커져갔다. 이번 방학에는 가족법 관련 기관에서 실무수습을 하여 가족법에 깊이를 더하겠다고 마음먹고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지원했다.

내가 생각한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가정폭력이나 갈등 탓에 이혼을 하고 싶으나 수입료 부담에 이리저리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무료 법률상담소였다. 나의 그런 생각은 실무수습 첫날부터 보란 듯이 깨어졌다. 소장님으로부터 가족법 변천사에 관한 강의를 들으면서 이곳이 국내 최초의 여성변호사가 일신의 영달을 포기하고 어려운 여성들을 위해 설립한 기관이라는 점, 단순한 법률 상담이 아닌 호주제 폐지, 호주상속 폐지 등 제도개선에 힘쓰고 사회적 인식 개선에 앞장서는 기관이라는 점에 놀랐다. 작은

상담소라고만 생각했는데,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거대한 민간 싱크탱크였던 것이다.

2주간의 실습기간 동안 상담 참관, 소장 작성, 사이버상담, 20대 국회의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 조사 등 많은 과제를 수행하였다. 그 중 가장 뜻깊었던 과제는 균형법상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의견서 작성이었다. 부끄럽게도 나는 양형기준이 양형위원회를 통하여 다양한 기관의 의견이 반영하여 만들어지는 것인지조차 몰랐다. 막상 의견서를 작성하려 하니, 고민이 많아졌다. 균형법상 성범죄의 양형기준은 일반 형법상 성범죄의 그것보다 훨씬 엄격했는데, 균형법이라고 해서 왜 엄격해야 하는지, 이 법이 보호하려는 법익은 무엇인지, 피해자의 입장을 반영하는 양형기준은 무엇인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법이라는 건, 다양한 시각이 모여 만들어지는 것인데 그 법을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을 배우게 된 것 같다.

내가 실무수습을 통하여 얻고자했던 것은 가족법 공부였는데, 너무나 많은 것들을 얻어간다. 나는 지금까지 결과물로서의 법률만 봐왔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많은 것들이 있다. 그 법률에 담겨진 다양한 입장과 이해 조정, 법률이 반영하여야 할 가치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그 고충을 모아 사회에 목소리를 내는 기관의 역할까지. 2주 동안 법을 대하는 마음가짐을 배웠다.

## ● ● ● 고맙습니다

### 2020년 1월 자원봉사자

#### • 주간상담을 해 주신

강소영, 강윤영, 강종협, 김수경, 김지원, 김태주, 박다혜, 박수열, 안서연, 윤원섭, 이현정, 이혜민, 장세호, 조진형 변호사 님

#### • 야간상담을 해 주신

김연두, 김윤미, 김진아, 류현정, 이승주, 황미옥 변호사 님

#### • 다문화 가정을 위한 영어상담을 해 주신

사대진 변호사 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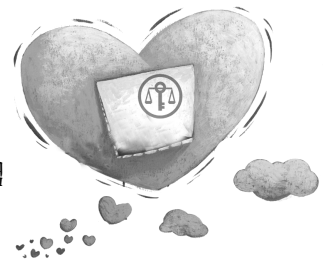
#### • 학생 자원봉사

김준성, 김지연, 나현수, 남은결, 박수연, 배은진, 임지윤 님

### 후 원

#### • 운영후원금을 주신 분

김용현, 이현혜, 박미라 님



#### 회원이 되시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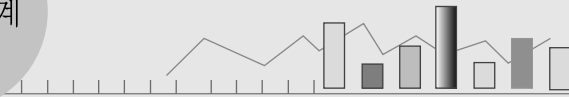
일반회원들은 월 5천원씩 또는 년 5만원, 평생회원은 50만원을 일시 납입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 밝히기를 원치 않는 분들은 아래의 구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주소가 변경된 회원은 반드시 상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농협 317-0003-1418-11 가정법률상담소  
연락처 : 780-5688 재무회계과



## 상담소 소식과 상담통계



### 구 지부와 업무협약 관련 논의하여 진행

상담소는 지난 1월 3일 본소를 방문한 구 지부 소장들과 지역에서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법률상담 및 관련 사업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에 돌입하였다.

2019년 12월 31일자로 본·지부 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종전과 다른 형태로 지역사회에서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구 지부에서는 첫째, 지부인충취소의 효력을 일정 기간 유예해 줄 것 둘째, 법인 설립을 하지 않고도 업무협약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 그리고 셋째, 종전과 같이 가정법률상담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 등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요청을 두고 논의한 결과 본소에서는 6개월 정도 여유를 두고 그 기간 동안 법인 설립이나 명칭 변경, 상담관리 프로그램 정비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업무협약은 법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인 설립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인이 아니더라도 협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 두도록 하였다. 다만 명칭과 관련해서 이는 법률구조법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이어서 사용이 불가하므로 각 기관의 특성에 맞게 명칭을 변경하도록 권고하였다.

이 날 참석한 구 지부 그리고 참석치 못하였으나 추후 연락을 통해 본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로 한 구 지부들은 앞으로 업무협약을 통해 소송구조 연계 등 종전 사업의 대부분을 합리적으로 수행하는데 뜻을 같이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업무협약 신청을 하겠다고 하였다. 본소에서는 구 지

부들 중 업무협약 기관과의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통해 각 지역사회의 저소득 취약계층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본소에서는 현재 요청이 있는 구 지부에게 <가정상담> 등 본소 발행 출판물을 예전과 같이 지원할 계획으로, 앞으로도 요청이 있을 시 법률구조 활동에 필요한 출판물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 실시

본소에서는 1월 13일부터 28일까지 2주간에 걸쳐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이 진행되었다. 본소의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은 법률구조사업을 이해하고 예비법조인으로서의 실무지식을 함양하는 학습의 장을 제공함과 동시에 우리 사회의 가족문제와 공익, 인권에 대한 의식을 강화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실습에는 모두 4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으며 실습생 명단은 다음과 같다. (실무수습 소감문 28면)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 김시온 / 1학년 송성희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 김서연 / 유예진

## 본소 교육부, 전국 교사 대상 교원직무연수

본소 교육부에서는 1월 14일부터 16일까지 전국 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15시간의 「법과 생활」교원직무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번 직무연수에서는 가족법 개정사와 법률구조, 혼인, 이혼, 친자·양자, 부양, 성년후견, 상속 등의 가족법과 가족관계등록법, 가정폭력특별법 및 학교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폭력예방교육, 채권채무, 임대차관련 법률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졌다. 수강생들은 강의를 들은 후 궁금한 점에 대해 질문하고 배운 내용을 간단히 실습해보는 시간도 가졌다. 수강생 모두 이번 강의를 통해 가족법과 가족문제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

어 좋았고, 생생한 사례를 통해 배울 수 있어서 매우 유익한 시간 이었다고 평가하였다. (관련사진 2면)

## 이레상담교육원 대상 법률구조체험교육 실시

본소에서는 지난 1월 22일 본소를 방문한 이레상담교육원의 가정폭력시설 종사자 양성 교육 교육생 및 직원들 32명을 대상으로 '상담소의 법률구조사 및 가족법개정사', '가족법 및 이혼 소송 관련 판례 의 동향', '가정폭력특별법 및 본소의 법률구조 사업 및 기관 연계 절차' 등을 내용으로 법률구조체험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생들은 강의를

## 2020년 1월 본부 상담통계

| 총상담 5,748    |          |      |    |    |    |
|--------------|----------|------|----|----|----|
| 법률상담 (5,343) |          |      |    |    |    |
| 면접           | 전화       | 인터넷  | 서신 | 순회 | 지상 |
| 931          | 4,311    | 94   | 2  | 4  | 1  |
| 화해조정         | 소장 등서류작성 | 소송구조 |    |    |    |
| 266          | 94       | 45   |    |    |    |

\* 인터넷 정보 이용 47,978건

2020년 1월 한달 간 상담소에서 진행한 총 상담건수는 5,748건이었다. 상담처리별로 살펴보면, 법률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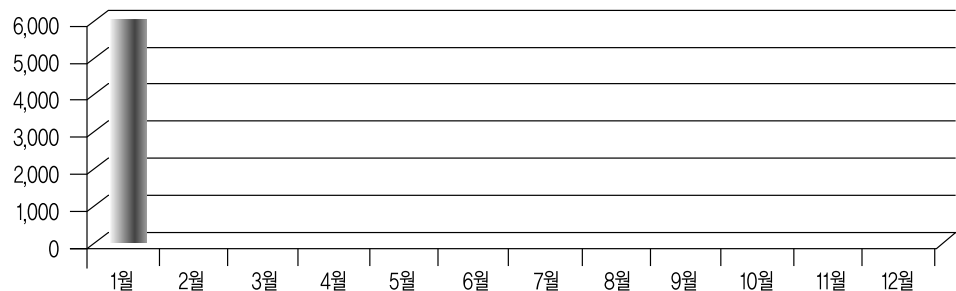
5,343건(93.0%), 화해조정 266건(4.6%), 소장 등 서류작성 94건(1.6%), 소송구조 45건(0.8%)이었다.

법률상담 5,343건을 사건내용별로 살펴보면, 2019년 12월에 비해 가사사건의 경우에는 남녀관계(0.4%→0.5%), 이혼(21.1%→22.9%), 양육비(7.1%→7.9%), 친생자존부(2.0%→2.3%), 유언·상속(6.9%→8.9%), 가족관계등록부(4.4%→5.2%), 개명(0.6%→0.7%), 성변경(1.0%→1.3%), 미성년후견(0.4%→0.5%)에 관한 상

담이 증가하였다. 한편,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민사기타(0.4%→0.5%),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형사절차(0.4%→0.5%)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법률상담 5,343건을 상담방법별로 살펴보면, 면접상담 931건(17.4%), 전화상담 4,311건(80.7%), 인터넷상담 94건(1.8%), 서신상담 2건(0.0%), 순회상담 4건(0.1%), 지상상담 1건(0.0%)이었다.

2020년  
월별  
총 건수



듣고 질의응답시간을 가졌으며 가정폭력 사건의 처리 절차, 법률구조 사례, 소송 구조 절차 및 대상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졌다. 조은경·권지연 상담위원이 강의와 진행을 맡았다. (관련사진 2면)

## 출장 상담 및 법교육

법의 생활화 운동의 일환으로 본소의 법 교육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출장 법 교육은 가족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가정폭력특례법 등을 주제로 하며, 본소 상담위원들의 상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충실한 강의로 넓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본소에서의 실습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 ●동국대 법학과 현장실습 1.2.-1.31

김지민, 유재혁, 이영지, 최지은, 강유리, 강현재, 김민재, 남가운, 여서현, 홍진호

### ●이대 현장실습 1.2.- 2.28.

강명희(행정학과), 김하유(심리학과), 조은송(사회학과), 황인경(국제사무학과)

## 출장법교육 및 순회상담

- 1.15. 순회상담-과천여성비전상담센터  
조은경 상담위원
- 1.22. 법률구조체험교육(1)-이레상담교육원  
조은경·권지연 상담위원
- 1.28. 강서지역자활센터-가족법 및 신용회복 교육  
조은경 상담위원

## 가정법원 출장상담

조경애, 박소현, 조은경, 복미영, 김진영, 최수진, 전규선, 천다라, 유혜경, 권지연 상담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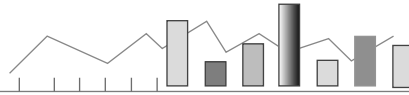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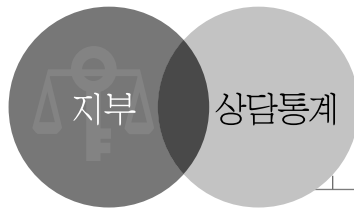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은 1월 9일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포용적 가족문화 법제개정위원회에 참석하였다. 29일에는 업무협약기관인 한국가족상담협회의 문경일 사무국장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무료심리 상담과 소송구조 지원 등에 관한 업무 협의를 하였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은 1월 26일 채널A와 설 명절 연휴 기간에 발생한 가족간 갈등, 사건 등과 관련한 인터뷰를 하였다.

## 곽배희 소장, 교원직무연수 강의 등

곽배희 소장은 지난 1월 3일 본소에서 있었던 구 지부 소장들과의 업무협약 관련 논의 모임에 참석했다. 14일에는 본소의 교원직무연수에서 법률구조의 역사 및 가족법개정 운동사에 대해 강의 했다.





• 지부통계는 지부 체제가 유지되었던 2019년 12월까지  
본소에 접수된 대로 게재합니다.

### 2019년 12월 지부 상담통계

| 구 분<br>지 부               | 총 건수 | 법률상담 | 법률구조  |              |      |
|--------------------------|------|------|-------|--------------|------|
|                          |      |      | 화해 조정 | 소장 등<br>서류작성 | 소송구조 |
| 강릉<br>(033) 652-9555     | 144  | 144  |       |              |      |
| 구리·남양주<br>(031) 551-9976 | 223  | 53   | 170   |              |      |
| 군산<br>(063) 442-1560     | 104  | 99   | 3     | 2            |      |
| 대구<br>(053) 745-4501     | 558  | 484  | 71    |              | 3    |
| 대전<br>(042) 520-5258     | 198  | 197  |       | 1            |      |
| 동해<br>(033) 535-0188     | 111  | 111  |       |              |      |
| 목포<br>(061) 273-2514     | 168  | 168  |       |              |      |
| 부천<br>(032) 667-2314     | 389  | 280  | 109   |              |      |
| 성남<br>(031) 707-6661     | 298  | 247  | 47    | 4            |      |
| 송도<br>(032) 834-1369     | 159  | 42   | 113   | 4            |      |
| 수원<br>(031) 243-4600     | 305  | 278  | 27    |              |      |
| 순천<br>(061) 753-9910     | 159  | 153  | 6     |              |      |
| 안동<br>(054) 856-4200     | 148  | 147  | 1     |              |      |
| 울산<br>(052) 246-9568     | 51   | 51   |       |              |      |

| 구 분<br>지 부              | 총 건수         | 법률상담         | 법률구조       |              |          |
|-------------------------|--------------|--------------|------------|--------------|----------|
|                         |              |              | 화해 조정      | 소장 등<br>서류작성 | 소송구조     |
| 익산<br>(063) 851-5113    | 294          | 294          |            |              |          |
| 인천<br>(032) 865-1120    | 204          | 87           | 116        | 1            |          |
| 전주<br>(063) 244-2930    | 183          | 183          |            |              |          |
| 정읍<br>(063) 535-3705    | 143          | 139          | 4          |              |          |
| 제천<br>(043) 644-5690    | 102          | 102          |            |              |          |
| 중구<br>(02) 2238-6554    | 268          | 268          |            |              |          |
| 진주<br>(055) 746-7975    | 145          | 87           | 58         |              |          |
| 창원·마산<br>(055) 261-0280 | 446          | 432          | 14         |              |          |
| 청주<br>(043) 257-0088    | 150          | 125          | 17         | 8            |          |
| 춘천<br>(033) 257-4688    | 130          | 130          |            |              |          |
| 태백<br>(033) 554-4004    | 91           | 91           |            |              |          |
| 평택·안성<br>(031) 611-4251 | 155          | 141          | 12         | 2            |          |
| 포항<br>(054) 283-7555    | 39           | 39           |            |              |          |
| <b>지부총상담</b>            | <b>5,365</b> | <b>4,572</b> | <b>768</b> | <b>22</b>    | <b>3</b> |



## 백인변호사단 소·송·구·조

### 완결된 소송구조 사건

####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에 대하여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지급 결정

법률구조 2017-434, 2019-36

담당 : 문준석 변호사, 최국신 변호사

사건명 : 양육비

**내용 :** 청구인(여, 52세)과 상대방(남, 49세)은 1998년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1(여, 20세), 사건본인2(여, 18세), 사건본인3(여, 17세)을 두었으나, 2006년 12월 협의이혼을 하였다. 이혼 당시 상대방의 요구로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상대방이 지정되었지만 2009년 3월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을 통하여 청구인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이혼 및 친권자·양육자 변경 심판 청구 당시 청구인과 상대방은 양육비에 대하여 별도로 협의하지 않았으며, 상대방은 2013년도에 8차례에 걸쳐 총 501만원을 지급한 것 외에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혼 후 현재까지 청구인은 단독으로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다. 청구인은 헤어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으나 생활이 어려워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 사건본인들의 양육을 위해 대학생인 사건본인1의 기숙사비로 학기당 587,000원, 식대 및 책값으로 학기당 100만원이 지출되고 있고, 고등학생인 사건본인2, 3의 기숙사비 및 과외비로 사건본인 1인당 매월 80만원의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 청구인의 소득으로는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은행 및 읍사무소에서 대출을 받아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다. 이에 청구인은 이혼 후 현재까지 받지 못한 과거양육비와 미성년인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의 장래양육비를 청구하기 위

하여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재판을 통하여 사건본인들의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가 결정이 되었으나 상대방은 이에 대한 항고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상대방이 과거양육비를 분담할 이유가 있는 점, 청구인이 3명의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으며, 생활이 어려워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된 점 등을 이유로 상대방의 항고를 기각하였다(광주가정법원 2019. 7. 15.). 이로 인해 상대방은 대법원에 다시 재항고하였지만 이 또한 기각되었다(대법원 2019. 12. 6.).

**결과 :** 승소(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2018. 11. 1.)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가. 사건본인들의 과거양육비로 5,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사건본인 2, 3의 장래 양육비로 2018. 11. 1.부터 위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1인당 매월 40만원씩을 매월 25일에 지급하라.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3.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을 통해 친모녀관계를 밝힘

법률구조 2019-206

담당 : 강소영 변호사

사건명 :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

**내용 :** 원고(여, 55세)는 피고(여, 18세)의 친모이다. 원고는 피고의 부와 동거하며 2001년 피고를 출산하였다. 피고 출산 당시 피고의 부는 ○○○와 혼인 중이었으므로 출생 신고를 하며 피고의 모를 ○○○으로 신고하였다. 2018년 ○○○은 피고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을 청구해 판결이 확정되었다. 재판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와 유전자 검사를 받았고, 친생자관계가 성립한다는 감정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가족관계등록부상 피고와의 친모녀관계를 밝히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19. 11. 19)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사업실패와 건강악화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19-297**

**담당 :** 박은정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50세)은 2001년경 소프트웨어 및 게임 프로그램 개발회사를 창업하여 운영하였고, 2009년경에는 수입식품 유통회사도 함께 운영하였다. 그러던 중 2011년경 납품대금으로 받은 결재어음 약 2억 원이 부도가 나면서 그동안의 막대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해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두 회사 직원들의 월급과 세금이 미납되면서 법인통장이 압류되었고, 더 이상의 회사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2012년경 폐업하였다. 이후 직원들의 월급과 채무 일부를 대출받아 지급하는 등 채무변제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역부족이었다. 설상가상으로 신청인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갑상선암을 판정받고 갑상선 전절제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실패로 2차, 3차 수술까지 받아야만 하였다. 또한 2015년경에는 폐암 판정을 받고 오른쪽 폐의 절반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다. 이후 2017년경 왼쪽 폐에도 암 종양이 전이된 것을 확인한 후 의사로부터 재수술을 권유받았으나 암치료 보장성보험이 압류되고 수술비용도

없어 받지 못하였다. 현재 신청인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지만 위와 같은 건강 문제로 인해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사업실패로 1억 4천만원에 달하는 채무가 발생하였으나 건강상 문제로 지급불능상태에 빠져 있는 신청인은 채무해결을 위해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19. 12. 18.)

채무자를 면책한다.

#### 양육비 지급 의무를 회피한 모에 대하여 이행명령 결정

**법률구조 2019-300**

**담당 :** 이용락 변호사

**사건명 :** 이행명령

**내용 :** 신청인(남, 38세)은 피신청인(여, 33세)과 2006년 혼인하여 사건본인들(남 12세, 9세)을 두었으나 2015년 재판상 이혼하였다. 당시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신청인이 지정되었으나 양육비는 정하지 않았다. 이후 양육비 청구를 통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6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월 20만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고, 2017년 7월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이 될 때까지 1인당 월 25만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도록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다. 피신청인은 위 조정조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에는 적은 액수만을 지급하였고, 2018년 또한 사건본인 1인에 해당하는 양육비만을 지급하다가 이마저도 지급을 중단하였다. 신청인은 위와 같은 피신청인의 양육비 불이행으로 인해 사건본인들의 양육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피신청인에게 양육비 지급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이만큼 주는 것도 고맙게 생각하라고 말하며 거절하였다. 피신청인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게 된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예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을 한 바 있으나 예금 잔액 부족으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신청인은 미지급된 사건본인들의 양육비에 대한

이행명령을 신청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2020. 1. 20.)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서울가정법원2016ㄴ단0000 양육비 사건의 2016. 6. 23.자 조정조서에 따른 의무의 이행으로 미지급 양육비 중 10,000,000원을 지급하되, 이 명령이 고지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10개월간 매월 말일에 1,000,000원씩 분할하여 지급하라.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여자문제로 아내를 폭행하고,  
도박을 하다 가출하여 연락 두절된 남편에 대한  
이혼 판결**

**법률구조 2019-396**

**담당 : 황현정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여, 56세)와 피고(남, 56세)는 2010년 4월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이다. 원고는 중국국적자였으나 2009년 4월 귀화허가를 받았고, 피고는 중국국적자이다. 피고는 피고의 여자문제로 원고와 다투다 원고를 폭행한 적이 있다. 또한 혼인기간 내내 일을 하지 않는 날에는 도박을 했는데, 게임방에서 천만 원을 잃고 오기도 했고, 카지노도 출입하고 마작도 했다. 2015년경 피고는 원고와 크게 다툰 후 집을 나가 현재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다. 2019년경 피고의 체류연장을 위해 연락이 닿은 적이 있었으나 이후 다시 연락이 두절되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20. 1. 16.)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사기를 당해 채무가 증대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19-406**

**담당 : 이정현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42세)은 직장생활을 하던 중 전배우자를 만나 혼인하였고 슬하에 자녀 둘을 두고 가정을 꾸렸다. 풍족하지는 않지만 행복하게 살아오던 중 전배우자의 소득 만으로는 생계가 빠듯하여 전세보증금을 빼 부동산에 투자하였으나 사기를 당하였다. 이 문제로 2015년경 전배우자와 이혼하게 되었고 두 자녀는 전배우자가 양육하게 되었다. 이혼 후 신청인은 이일 저일 하며 지내던 중 인테리어 관련 사업자를 내면 다달이 월급과 성과급을 주겠다는 지인의 권유로 2015년 8월경 법인 사업자가 되었다. 그리고 2015년 11월경 수주가 들어와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였고 2016년 4월경 공사가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의뢰한 회사에서 잔금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주지 않았다. 신청인은 개인대출을 받아 다른 협력 업체에 대금을 치러줄 수 밖에 없었고 의뢰한 회사에 재차 잔금을 요구하였지만 끝내 받지 못하였다. 나중에 사실을 알아보니 신청인은 사업을 권유했던 지인과 의뢰한 회사에 사기를 당한 것이었다. 신청인은 개인대출채무와 세금 등으로 2016년 12월경 폐업을 하였고 소득이 없어 지급불능상태에 빠졌다. 현재 신청인은 메이크업 아르바이트를 하며 월 평균소득 80만원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2번의 사기로 채무가 증대된 신청인은 아직까지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다. 이에 채무를 해결하고 장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게 되었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0.01.15.)

채무자를 면책한다.

조경애 법률구조 1부장

## 등지교실 : 무료공개강좌

### 나와 가족의 정신건강과 행복한 가족관계형성을 돕는 교육강좌

- ▶ 일시 : 매월 둘째 목요일 오후 3시 ~ 5시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 ▶ 진행 : 황순찬  
(사회복지학 박사,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외래교수)
- ▶ 일정 및 강의제목

| 일시      | 강의제목                            |
|---------|---------------------------------|
| 2월 13일  | 모든 정신적 어려움의 근원, 성격장애            |
| 3월 12일  |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만드는 분노조절 및 충동조절 장애 |
| 4월 9일   | 극단적 선택을 초래하는 기분장애               |
| 5월 14일  | 안정된 삶을 방해하는 불안 및 공황장애           |
| 6월 11일  | 현실을 왜곡하고 관계를 파괴하는 망상장애          |
| 7월 9일   | 가정을 무너뜨리는 중독문제                  |
| 9월 10일  | 시간을 넘어서 고통을 지속시키는 트라우마 관련 장애    |
| 10월 8일  | 잃어버린 자아를 찾아서 - 정신증(조현병과 조울병)    |
| 11월 12일 | 몸이 기억하는 고통, 신체 및 수면장애           |
| 12월 10일 | 건강한 삶의 근원을 만드는 아동기 정신건강         |

##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 -김병후 원장과 함께하는 부부갈등과 상처 다루기-

### 가족·부부상담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상처받은 관계를 치유하기 위한 공개강좌 프로그램

- ▶ 일시 : 2020년 1월~11월 매월 셋째 목요일 오후 3시~5시(8월 휴강)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수시접수 가능)
- ▶ 강사 : 김병후 원장 (정신과 전문의, 김병후정신건강의학과)
- ▶ 장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8층 강의실
- ▶ 강의 일정 및 주제

| 일시         | 강의제목                       |
|------------|----------------------------|
| 2월 27일(목)  |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사회적 차이       |
| 3월 26일(목)  | 사랑의 과학                     |
| 4월 23일(목)  | 신경과학과 정신분석의 관점에서의 분노       |
| 5월 28일(목)  | 부부갈등이 만들어지는 경로             |
| 6월 25일(목)  | 외도                         |
| 7월 23일(목)  | 어린 시절의 경험이 부부 관계에 미치는 영향   |
| 9월 24일(목)  | 갈등을 일으키는 성격과 가치관           |
| 10월 22일(목) | 갈등이 해결 되어 질 때 볼 수 있는 관계 양상 |
| 11월 26일(목) | 성숙한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특성      |

## 2020년 2월 교육부

## 이혼, 현실과 미래 더 생각해보기

### 부부갈등 및 이혼에 관해 보다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심사숙고함으로써 후회 없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 상담프로그램

- ▶ 대상 : 결혼생활의 어려움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남녀  
(당사자 외 참여불가)
- ▶ 내용 : - 1단계 : 법률상담 및 이혼 관련 비디오 시청  
매주 평일 상시  
- 2단계 : 집단심리상담  
(이혼 전 교육 1단계 참가자, 사전예약 필수)  
연중 매월 둘째·넷째 월요일 오후 2시 ~ 4시  
(3월 9일, 3월 23일)
- ▶ 강사 : 김명순 소장 (세은심리상담연구소)

## 비혼모가정을 위한 워크숍

###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 하는 엄마랑 아기랑 행복 캠프」 비혼모 가정이 처한 법률적·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비혼모 가정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1박2일 자녀 동반 캠프

- ▶ 일시 : 2020년 5월 / 8월 / 9월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비혼모 가정
- ▶ 후원 :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  삼성생명 )

## 생활법률강좌

- ▶ 일시: 연중(요청 시 사전일정 조율)
- ▶ 신청방법: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전화 또는 이메일로 신청)
- 전문가를 위한 출장 법 교육  
1366 상담원, 이주여성 지원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전문상담원에게 필요한 가족관련 법률·가정폭력특별법 등을 강의함으로써 직무전문성을 향상시키는 출장 법 교육
- 학교현장을 찾아가는 법 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초·중·고교 학생 및 학부모·교사들에게 가족관련 법률 및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는 출장 법 교육
- 학생들을 위한 법률구조 체험교육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법률구조·가족관련 법률 및 가정폭력특별법 강의를 통해 법률구조 제도에 대한 이해와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는 체험교육

※ 일정 및 교육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진행 상 반드시 사전접수 바랍니다.

● 장 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8층 강의실(변경될수 있으므로 사전문의 요망) ● 교육문의 및 신청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  
TEL : 02-782-3601 FAX : 02-780-0485 홈페이지 : [www.lawhome.or.kr](http://www.lawhome.or.kr) E-mail : [edu@lawhome.or.kr](mailto:edu@lawhome.or.kr)  
트위터 : <https://www.twitter.com/LegalAidCenter>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 ☎ 대표전화 **1644-7077**





법률구조를 통한  
법률복지사회 구현  
우리 사회의  
모든 가정과 함께

## 등지교실 : 무료공개강좌

나와 가족의 정신건강과 행복한 가족관계형성을 돕는  
교육강좌

##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김병후 원장과 함께하는 부부갈등과 상처 다루기-

가족·부부상담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  
지하고, 상처받은 관계를 치유하기 위한 공개강좌 프로그램

## 이혼, 현실과 미래 더 생각해보기

부부갈등 및 이혼에 관해 보다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심사숙고함  
으로써 후회 없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 상담프로그램

## 비혼모가정을 위한 워크숍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 하는 엄마랑 아기랑 행복 캠프」  
비혼모 가정이 처한 법률적·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비혼모 가정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1박2일 자녀  
동반 캠프

## 생활법률강좌

- 전문가를 위한 출장 법 교육
- 학교현장을 찾아가는 법 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 학생들을 위한 법률구조 체험교육

이제 모바일에서도 편리하게  
사이버상담을 이용하세요.



<http://lawhome.or.kr/m>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 ☎ 대표전화 **1644-7077**

●교육문의 및 신청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

T. 02-780-5688~9 F. 02-780-0485 홈페이지 : [www.lawhome.or.kr](http://www.lawhome.or.kr)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SNS

트위터▷ <https://www.twitter.com/LegalAidCenter>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koreallawhome>



상담소에서는 1월 14일부터 16일까지 전국 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15시간의 「법과 생활」 교원직무연수를 실시하였다. (관련기사 33면)



본소는 지난 1월 22일 본소를 방문한 이레상담교육원의 가정폭력시설 종사자 양성 교육 교육생 및 직원들 32명을 대상으로 법률구조체험교육을 진행하였다. (관련기사 33면)

## 등지고실 : 무료공개강좌

나와 가족의 정신건강과 행복한 가족관계형성을 돕는 교육강좌

- ▶ 일시 : 매월 둘째 목요일 오후 3시 ~ 5시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 ▶ 진행 : 황순찬  
(사회복지학 박사,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외래교수)
- ▶ 일정 및 강의제목

| 일시      | 강의제목                            |
|---------|---------------------------------|
| 2월 13일  | 모든 정신적 어려움의 근원, 성격장애            |
| 3월 12일  |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만드는 분노조절 및 충동조절 장애 |
| 4월 9일   | 극단적 선택을 초래하는 기분장애               |
| 5월 14일  | 안정된 삶을 방해하는 불안 및 공황장애           |
| 6월 11일  | 현실을 왜곡하고 관계를 파괴하는 망상장애          |
| 7월 9일   | 가정을 무너뜨리는 중독문제                  |
| 9월 10일  | 시간을 넘어서 고통을 지속시키는 트라우마 관련 장애    |
| 10월 8일  | 잃어버린 자아를 찾아서 - 정신증(조현병과 조울병)    |
| 11월 12일 | 몸이 기억하는 고통, 신체 및 수면장애           |
| 12월 10일 | 건강한 삶의 근원을 만드는 아동기 정신건강         |

##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김병후 원장과 함께하는 부부갈등과 상처 다루기-

가족·부부상담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상처받은 관계를 치유하기 위한 공개강좌 프로그램

- ▶ 일시 : 2020년 1월~11월 매월 셋째 목요일 오후 3시~5시(8월 휴강)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수시접수 가능)
- ▶ 강사 : 김병후 원장 (정신과 전문의, 김병후정신건강의학과)
- ▶ 장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8층 강의실
- ▶ 강의 일정 및 주제

| 일시         | 강의제목                       |
|------------|----------------------------|
| 2월 27일(목)  |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사회적 차이       |
| 3월 26일(목)  | 사랑의 과학                     |
| 4월 23일(목)  | 신경과학과 정신분석의 관점에서의 분노       |
| 5월 28일(목)  | 부부갈등이 만들어지는 경로             |
| 6월 25일(목)  | 외도                         |
| 7월 23일(목)  | 어린 시절의 경험이 부부 관계에 미치는 영향   |
| 9월 24일(목)  | 갈등을 일으키는 성격과 가치관           |
| 10월 22일(목) | 갈등이 해결 되어 질 때 볼 수 있는 관계 양상 |
| 11월 26일(목) | 성숙한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특성      |

## 2020년 2월 교육부

### 이혼, 현실과 미래 더 생각해보기

부부갈등 및 이혼에 관해 보다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심사숙고함으로써 후회 없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 상담프로그램

- ▶ 대상 : 결혼생활의 어려움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남녀 (당사자 외 참여불가)
- ▶ 내용 : - 1단계 : 법률상담 및 이혼 관련 비디오 시청  
매주 평일 상시  
- 2단계 : 집단심리상담 (이혼 전 교육 1단계 참가자, 사전예약 필수)  
연중 매월 둘째·넷째 월요일 오후 2시 ~ 4시 (3월 9일, 3월 23일)
- ▶ 강사 : 김명순 소장 (세은심리상담연구소)

### 비혼모가정을 위한 워크숍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 하는 엄마랑 아기랑 행복 캠프」  
 비혼모 가정이 처한 법률적·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비혼모 가정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1박2일 자녀 동반 캠프

- ▶ 일시 : 2020년 5월 / 8월 / 9월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비혼모 가정
- ▶ 후원 :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SAMSUNG 삼성생명)

### 생활법률강좌

- ▶ 일시: 연중(요청 시 사전일정 조율)
- ▶ 신청방법: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전화 또는 이메일로 신청)

#### - 전문가를 위한 출장 법 교육

1366 상담원, 이주여성 지원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전문상담원에게 필요한 가족관련 법률·가정폭력특별법 등을 강의함으로써 직무전문성을 향상시키는 출장 법 교육

#### - 학교현장을 찾아가는 법 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초·중·고교 학생 및 학부모·교사들에게 가족관련 법률 및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는 출장 법 교육

#### - 학생들을 위한 법률구조 체험교육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법률구조·가족관련 법률 및 가정폭력특별법 강의를 통해 법률구조 제도에 대한 이해와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는 체험교육

※ 일정 및 교육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진행 상 반드시 사전접수 바랍니다.

●장 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8층 강의실(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전문의 요망) ●교육문의 및 신청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  
 TEL : 02-782-3601 FAX : 02-780-0485 홈페이지 : [www.lawhome.or.kr](http://www.lawhome.or.kr) E-mail : [edu@lawhome.or.kr](mailto:edu@lawhome.or.kr)  
 트위터 : <https://www.twitter.com/LegalAidCenter>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 ☎ 대표전화 **1644-7077**